

# 2021

## 해외수산협력센터

###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한국원양산업협회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 2021

해외수산협력센터

##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 제 1 장

## 일반기구

1-1 제3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회의	06
1-2 제166차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11



##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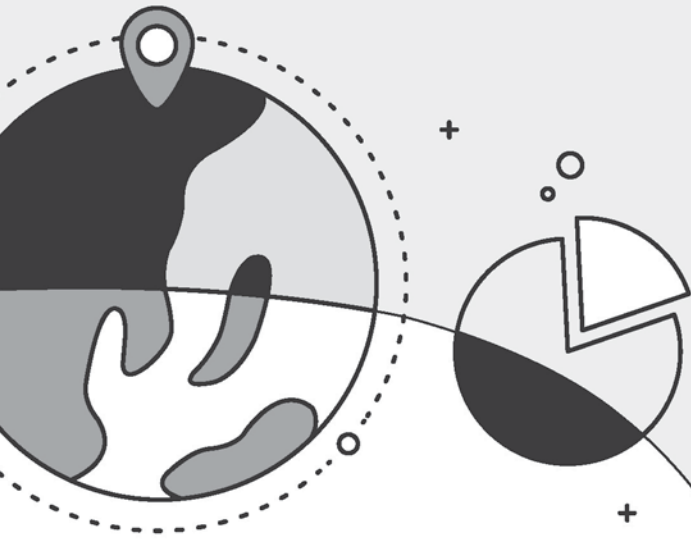
## 지역수산기구

2-1	제9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18
2-2	제6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25
2-3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30
2-4	제25차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연례회의	44
2-5	제97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특별회의	49
2-6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	51
2-7	제8차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당사국 회의	60
2-8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4 회기간 회의	63
2-9	제98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71
2-10	제43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73
2-11	제98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계속)	76
2-12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81
2-13	제27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정기회의	85
2-14	제18차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연례회의	96
2-15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98



## 제 1 장 일반기구

1-1 제3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회의	06
1-2 제166차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11



2021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 1-1

# 제3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회의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3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회의  
(회의명 영문) Third Meeting of the Parties of the Port States Measures Agreement
- 일시/장소 : 2021.5.31.~6.4(5일)/화상회의
- 의장 : Mr. Ramon Van Barneveld(EU)

#### 2. 참석규모

- 참가국 : 65개 회원국, 35개 정부간기구, 12 NGO 등 약 65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하소형 서기관 외 7명



## II 회의 결과

### 1. PSMA 이행평가 설문조사

#### ○ 평가도구로서 유용성

- (당사국) 설문조사가 PSMA 이행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이고, 향후 평가를 위해서도 사용 가능함을 언급함
- (사무국) 설문조사의 응답율은 82%였고, 응답한 당사국 중 약 1/3이 외국어선에 대한 입항금지 등 항구조치를 취한 적이 있음을 확인함
- (NGO) 설문조사에 대한 당사국 응답율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함을 언급함(PEW)

#### ○ 설문조사 개선방안

- (평가주기) 2년, 4년, 6년 의견 중 4년\*(2회의 당사국 회의)으로 합의

\* 협정 제24조에는 협정 발효 4년 후 협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평가 회의 개최는 당사국들이 필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논의방법) 당사국 서면 의견을 종합한 후, 새롭게 구성되는 ‘전략 작업반’에서 논의하는 옵션1과, 사무국 및 의장단에서 작업하는 옵션2 중 옵션1로 합의하고, 작업반 위임사항(보고서 부록)을 채택함

### 2. PSMA 이행 경과보고 (당사국 · 지역수산기구)

#### ○ 당사국 이행 경과보고 및 비당사국 가입 의사 표명

- (당사국)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 · 제도 정비 경과, 대내외 기관 간 협력(특히 정보교환), 역량 구축 지원 필요성, 지역기구 등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IUU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 (비당사국) 회의 참석 비당사국 중 다수\*는 IUU 근절을 위한 협정의 효과성에 공감, 협정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가입 일정 등을 소개함

\* 온두라스, 마살제도, 레바논, 콜롬비아, 기니비사우, 모로코, 벨리즈, 동티모르, 자메이카, PNG

#### ○ 이행평가 개선을 위한 이행위원회 설치 언급

- (미국) 불이행에 대해 즉시 벌칙 부과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나, 설문조사와 같은 단순 평가가 아닌 보다 심도 있는 평가 과정이 필요함
- (EU) 이행평가의 질적 향상이 반드시 이행위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양자·다자간 대화 증진을 통한 이행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사무국) 이행위 설치와 같은 사안은 작업반을 통해 당사국들이 논의하여 합의해야 하고, 사무국은 작업 권한이 없음

#### ○ 지역수산기구(RFMO) 이행 경과보고

- (배경) 2차 당사국 회의에서 RFMO들에게 PSMA 이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기로 하여, 사무국은 모든 RFMO에 서한을 발송함(합의된 형식이 없어 자유 형식으로 요청)
- (결과) 10개 RFMO\*로부터 정보가 제출, 사무국은 PSMA 요구사항을 19가지로 구분하여 각 RFMO 내 도입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함. 향후 RFMO들과 협의하여 표준화된 설문지를 개발(사무국)하기로 함

### 3. 글로벌 정보교환시스템(GIES)\* 개발 경과

\* GIES : 협정 제16조에 따라, 협정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공유 시스템. 본 시스템에 업로드되는 정보(선박에 대한 입항거부, 항구검색, 기국조치 등)는 타국, 지역기구 등과 공유됨

#### ○ GIES 프로토타입 소개 및 시범 단계 시작

- 사무국은 GIES 초기 형태를 소개, 사용방법을 설명하였고, 당사국들이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해 보는 시범 단계 시작을 제안함

- 당사국들은 시범 단계 사용 경험을 토대로 정보교환 기술작업반 회의('22년 초)에서 비밀유지를 포함한 운영규칙을 논의하여 제4차 당사국 회의('23년 5월)에서 시스템에 대해 확정하고 승인할 예정

#### ○ 협정 부록 개정\* 필요성

- \* 부록 개정 요건 (협정 제34조 제2항) : 부록 개정 회의 출석 당사국 2/3 동의  
본문 개정 요건 (협정 제33조 제3항) : 협정 개정 회의 출석 당사국 컨센서스

- (노르웨이) GIES 시스템으로 공유될 정보(검색보고서 등)의 결정에 따라 협정 부록\* 개정 필요성을 질문

- \* 부록 A (입항 신청 시 요구정보), 부록 C (검색결과 보고서 양식)

- (일본) 정보교환의 협정상 근거는 제6조 및 제16조\*이며, 제9조에서의 통보\*\*는 기국, 연안국, RFMO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당사국에 정보가 공유되는 GIES를 통한 정보교환은 의무가 아닌 장려사항임. 국제적, 국내적으로 긴 시간이 요구되는 부록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

\* 제6조 (협력 및 정보교환), 제16조 (정보의 전자적 교환)

\*\* 제9조 (입항, 승인 또는 거부) 제3항 : 각 당사국은 입항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선박의 기국과 적절할 경우, 관련 연안국 및 국제기구에 결정을 통보해야 함

- (사무국) 협정문 채택('09년)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한 변경 검토도 필요함. 정보교환의 핵심 근거조항은 제16조이나, GIES는 협정의 전체적인 이행을 위한 것임

## 4. 개발도상국 역량구축 지원

#### ○ FAO 글로벌 역량개발 프로그램(단일 후원국) 경과보고

- (후원국) 회의는 기여금을 제공한 후원국들에게 감사를 표명함
- (수혜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개도국들은 FAO에게 감사를 표명하였고, MCS 및 GIES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

- (사무국) 프로그램을 통해 43개국이 지원을 받았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당사국은 사무국에 공식 요청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음을 언급
- 협정 제6부 신탁기금(복수 후원국) 현황 보고
  - 사무국은 후원금이 접수되는 대로 기금이 운영될 것임과 다음 당사국회의에서는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함을 언급
- 글로벌 역량개발 포털
  - 사무국은 IUU 근절 역량개발을 위한 전세계 여러 지원 프로그램 간 정보 공유 및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개설된 글로벌 역량개발 포털을 소개하고 관련 후원국, 기구, 수혜국, 기타 실체들의 포털에 대한 정보 제출을 장려함
    - \* 지원이 필요한 지역, 부문을 확인하여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간 중복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 도모

## 5. PSMA 효과성 개선 전략

- 개선 전략 마련을 위한 작업반 수립
  - (논의결과) 화상회의의 한계로 회기간 작업반을 수립하여 논의하고, 본 회의에서 작업반 위임사항을 결정함

1-2

제166차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66차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회의명 영문) 166th Session of the FAO Council
- 일시/장소 : 2021.4.26.~4.30(5일)/화상회의
- 의장 : Mr. Khalid Mehboob(파키스탄)

2. 참석규모

- 참가국 : 49개 회원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남아공, 카메룬 등) 대표자 약 35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하소형 서기관 외 2명

## II 회의 결과

### 1. ‘새로운 FAO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관한 의견 대립

- (내용) 제130차 프로그램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 초안 작성 중, 총회에 회부될 ‘FAO 기본전략(Strategic Framework)’ 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개발과 관련, 미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
- (개도국)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들은 프로그램 위원회\* 보고서 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관한 언급\*\*을 이사회 보고서에서도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해 명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미국) 미국은 동 문구의 삽입을 끝까지 반대하여 기후변화 관련 국제합의문들의 명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됨

\* (이사회 보고서) (24항 i)) : 2030 아젠다, 파리협약, 및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향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측면 및 공유된 목표와 협력에 토대를 둔 SDG들과 부합하는 새로운 FAO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사진 출처) <https://sgkplanet.com>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은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지구 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성립된 국제합의문\* 및 협약\*\* 중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및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에 명시된 원칙으로,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젠다 21, 산림원칙성명,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UNFCCC), 생물다양성 협약(CBD),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UNCCD)

- 모든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의 의무를 갖고 있지만,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개발된 국가들이 개도국들에 비해 환경파괴에 기여한 정도가 크므로, 개발된 국가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함. (cf. 오염자 부담의 원칙)
- CBDR은 IATTC 협약(1949) 전문의 ‘공동의 우려(common concern)’ 및 UN 해양법 협약 136조의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개념으로부터 진화된 것임.
-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Common\\_But\\_Differentiated\\_Responsibilities](https://en.wikipedia.org/wiki/Common_But_Differentiated_Responsibilities)

## 2. 제42차 총회 투표절차에 관한 의견 대립

- (배경)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 투표가 불가능할 것에 대비하여 사무국은 총회 투표방식에 관한 문서\*를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

\* 주요내용 : (옵션1) 현장 투표 (옵션2) 온라인 투표 (옵션3) 우편 투표

- (개도국) 코로나19 상황과 타 기구 실행\*을 고려하여, 온라인 투표 주장

\* 로마 내 기구 중 하나인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최근 온라인 투표 실시를 결정하고 소프트웨어 준비도 완료하였음(투표는 아직 미시행)

- (미국) 현장과 관행에 따라 현장 투표 또는 위임 투표\* 실시 주장

\* 로마에 상주대표부를 갖고 있지 않은 회원국이 53개국으로, 이들 회원국은 코로나 이전에도 FAO 투표 시 타국 대표자를 통한 위임 투표를 실시해 왔음

- (결과) 미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 도출 실패, 이사회 권고 없이 총회에 논의 회부\*

\* 미국은 총회에서도 온라인 투표 방식 사용에 대한 합의가 부재할 경우의 절차를 질의하였고, FAO 법률국에서는 현장에 따른 현장 투표 실시 불가피 의견 제시



2021

해외수산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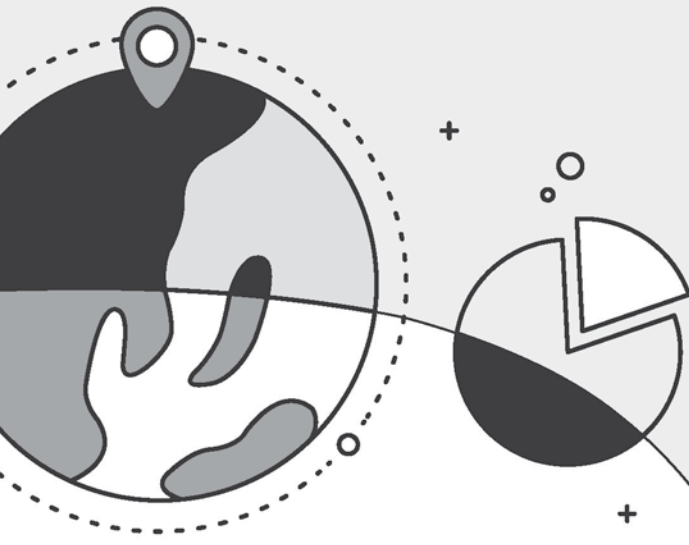




## 제 2 장

# 지역수산기구

2-1	제9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18
2-2	제6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25
2-3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30
2-4	제25차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연례회의	44
2-5	제97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특별회의	49
2-6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	51
2-7	제8차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당사국 회의	60
2-8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4 회기간 회의	63
2-9	제98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71



**2021**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2-10	제43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73
2-11	제98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계속)	76
2-12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81
2-13	제27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정기회의	85
2-14	제18차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연례회의	96
2-15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98

## 2-1

# 제9차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9차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9th Annual Meeting of the SPRFMO Commission
- 일시/장소 : 2021.1.20.~2.4(11일)/화상회의
- 의장 : Mr. Osvaldo Urrutia(칠레)

#### 2. 참석규모

- 참가국 : 15개 회원국(칠레, 페루, 에콰도르, 미국, EU, 중국 등), 옵서버 등  
약 10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 유은원(수석대표) 외 17명

## II 회의결과

### 1. 전갱이 보존관리조치 개정

- (주요내용) 제8차 과학위 조언을 반영하여 전갱이 TAC 증가\*(15%)

\* '20년 TAC : 68만톤 → '21년 TAC : 78.2만톤

- (논의결과) 컨센서스 도달에 실패\*하여 협약 제16조에 따라 투표 실시, 찬성 13, 반대 1(페루), 기권 1(중국)로 작업문서 채택

\* 페루는 이전 회의(들)에서와 동일하게, 협약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페루 EEZ 내에서의 어획한도를 설정하는 위원회의 TAC 결정이 협약 위반임을 주장

2021년 전갱이 어획한도

회원국	톤수
칠레	504,889
중국	49,639
쿡 제도	0
쿠바	1,745
에과도르	9,883
유럽연합	47,769
페로 제도	8,670
<b>한국</b>	<b>10,027</b>
페루(공해)	15,862
러시아	25,669
바누아투	36,549
합계	710,702*

\* 페루 EEZ 내 어획한도

1) 위원회는 전범위에 걸친 TAC를 78.2만톤으로 설정하고,

2) 회원국에게 합산 약 71만톤을 배분함으로써,

3) 페루 EEZ 내 어획한도를 약 7만톤으로 설정

→ 페루는 이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이 협약 위반임을 주장

## 2. 현 보존관리조치 개정

CMM	제안국	주요 내용
저층어업 (03-2020)	호주, EU,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ME 접촉 프로토콜 평가 과정 수정을 통해 과학위 권고 마련 시 고려요소 확대</li> <li>• Northwest Challenger 및 Central Louisville 수역의 VME 기준점 하향</li> </ul>
심해어종 (03a-2020)	뉴질랜드,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위 권고를 반영하여 21-22년 Tasman해 3개 수역* 오렌지 러피 어획한도 변경(711톤)</li> <li>*Northwest Challenger(396톤), Lord Howe Rise(261톤), West Norfolk Ridge(54톤)</li> <li>• 24h 단위 어획보고를 통해 어획한도 도달여부 모니터링</li> </ul>
선박등록부 (05-2019)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m 미만 연안개도국 오징어 조업선은 UVI/IMO 번호 및 선박 통신유형(Inmarsat) 요구사항 면제('26년에 재검토)</li> </ul>
항구검색 (07-2019)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록1 내 '조업허가 관련 사항'에 입항 선박의 어종별 어획한도 허가정보 기입 항목 신설 (⇒ 항구검색 비율 상향(5%→50%) 조항은 중국, 대만의 반대로 미채택)</li> </ul>
시험어업 (13-2020)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수역에 대해 2개 이상의 시험어업 계획서가 SC 및 총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사전예방적 어획수준 및 시험어업 수행조건 권고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li> </ul>
통발 시험어업 (14b-2020)	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위 권고를 반영하여 기간을 23년 10월까지 연장</li> <li>• 항차별 조업일수 80일(5일 추가), Kopernik 해산 TAC 20톤, 어구 선별성 평가를 위한 통발 설계 실험 허용</li> </ul>
옵서버 프로그램 (16-2019)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m 미만 연안개도국 오징어 조업선은 옵서버 승선 면제('26년 재검토)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대안적인 자료수집 방법 도입 (과학위 검토 및 총회 승인 대상)</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옵서버 프로그램 평가를 거친 3국의 경험을 토대로 회원국과 평가기관 모두에게 정보 제공 및 검토를 위한 보다 충분한 평가 일정 수립</li> </ul>

### 3. 신규 보존관리조치 제정

제목	제안국	주요 내용
이빨고기 시험어업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차 과학위에 제출되어 승인된 조업계획서 및 영향평가서를 토대로, 2021-23년 3년간 57.4 해구 내 일부 연구블럭에서 75톤(21년)의 이빨고기 시험어업 실시</li> </ul>
선박 식별표시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AO 선박 마킹 및 식별 표준에 관한 지침(제18차 COFI)과 부합하도록 선박에 마킹 실시 (⇒ 부이 및 부유물 마킹 조항은 칠레의 반대로 미채택)</li> </ul>

### 4. 미채택 제안서

#### ○ 전갱이 (페루)

조항	제안서 내용
25	자국 관할권 내 수역에 대해 취한 보존관리조치에 대해 사무국에 통보할 <del>것이 요구</del> <b>된다</b> → <b>하는 것을 환영한다</b>
26	EEZ 미개방 연안국(페루)의 어획량이 EEZ 미개방 연안국 할당량(총 TAC - 회원국 할당량)을 <del>초과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del> → <b>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b>
27, 28, 29	자국 EEZ를 협약수역에 미포함시키고 있는 연안국(페루)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위원회 조치와 양립가능한 자국 조치를 채택한 후 늦어도 15일까지 이를 사무국에 제출 → <b>삭제</b>

- (논의배경) '19년 TAC가 '초과'된 원인을 페루에게로 돌리고, 위원회가 투표로 결정한 보존관리조치와 '양립가능한' 국내조치를 페루가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현 보존관리 조치에 대해 페루가 개정 제안서 제출
- (논의결과) 페루를 제외한 회원국들은 페루의 제안서가 양립가능한 보존관리조치 수립에 역행함을 이유로 제안서 반대

○ 선박감시시스템 (칠레)

- (주요내용) ① 감시 목적을 위해, 연안국 EEZ 외측 한계 밖 100해리에 진입하는 선박의 VMS 정보를 기국·사무국 동의 없이 연안국에 제공, ② 선박이 연안국 EEZ 진입 시 연안국에 자동통보

- (논의결과) 연안국 및 미국, EU는 찬성하였으나, 아시아 3국\*은 반대

\* 중국과 대만은 공해에서의 위치추적은 국제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언급, 한국은 칠레 등이 유사 사례로 인용하고 있는 WCPFC 조치는 동 제안서와 같이 원격 모니터링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지적

○ 승선검색 (미국)

- (논의배경) 현 승선검색 조치(11-2015)는 잠정적으로 공해어업협정 규정을 적용하고, 위원회가 추후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여, 미국은 제6차 회의부터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미합의되어 옴

- (논의결과) 이전 연례회의(들)에서 논의된 제안서를 토대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의 쟁점 조항들에 대해서 접점을 마련하였으나, 무력사용 조항에 대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미채택

○ 전재 (에콰도르)

- (주요내용) IUU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협약수역 내 모든 대왕오징어 어획물의 전재는 항구에서만 실시, 대왕오징어 어업에 대한 전재 사전보고 면제 규정\* 삭제, 단순화된 전재보고 양식(부록4) 신설



**\* 보존관리조치 12-2020 제4항**

대왕오징어를 제외하고, 전채 받는 선박(운반선)의 당국은, 전채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전채 실시 늦어도 7일 전까지 협약수역에서 어획된 수산자원의 전채가 이루어질 예정인 14일의 전채 기간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 (논의결과) 회의 기간 중 에과도르는 ‘해상전채 금지’를 ‘공해전채 금지’로 수정한 안을 제출하였으나, 중국, 대만, 한국 등은 일관되게 반대하여 미채택, 단순화된 보고양식도 중국의 반대\*로 미채택

\* 국제무선신호, 컨테이너선 정보 등 포함에 반대

**주요 의견**

찬성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UU로 의심되는 미보고 해상전채 활동 존재</li> <li>• IUU 어업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방지가 중요</li> <li>• 모든 어업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전채 규율 필요</li> <li>• 적절한 모니터링이 보장된다면 해상전채 계속 되어도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UU 어업과 해상전채는 무관 (유죄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li> <li>• 공해어업협정 및 협약상 근거 없음</li> <li>• 입항전채는 비용 증가 초래, 업계의 자율성 침해</li> <li>• 새로운 오징어 조치가 발효된지 불과 1개월 이므로 본 논의는 시기상조</li> <li>• 해상전채는 타 RFMO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li> <li>• 전면금지가 아닌 진전된 관리방법에 대한 논의는 가능</li> </ul>

○ 대왕오징어 (에과도르)

- (주요내용) 15m 초과 오징어 조업선의 옵서버 커버리지(현행 : 조업일수의 5% 또는 5명)를 '27년까지 단계적으로\*(매년 15%p) 100%까지 상향

\* '22년(20%), '23년(35%), '24년(50%), '25년(65%), '26년(80%), '27년(100%)

- (논의결과) 중국, 대만, 한국의 반대로 미채택

#### 커버리지 상향 반대 이유

- 1) 현 조치 발효('21.1) 후 검토도 없이 새로운 조치 논의는 부적절
- 2) 커버리지 상향은 과학위에서 먼저 논의 필요
- 3) 오징어 어업은 혼획이 적은 어업이므로 높은 커버리지 불필요
- 4) 타 기구에서는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커버리지 상향

#### ○ 대왕오징어 (EU)

- (주요내용) <sup>①</sup> '21-'23년 기간의 대왕오징어 조업선 총톤수(GT)를 최근 3년 수준으로 제한, <sup>②</sup> 이는 연안개도국의 대왕오징어 어업활동 증가에 대한 향후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논의결과) 회원국 간 이견으로 미채택, 내년 연례회의에서 재논의

#### 주요 의견

- (한국, 대만) 특정 회원국에게 유·불리하지 않도록 기준연도 설정 필요
- (한국) 가능한 한 장기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준연도 수립 논의 필요
- (사무국) 기준연도 관련, 기구 설립('13년) 이전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 (EU) 등록선 기준은 사전예방적이지 아니므로 실조업선 기준이 바람직
- (중국) 등록선 기준도 고려 필요, 조업선에 운반선은 제외 필요
- (러시아) 노력량(총톤수)이 아닌 어획량(TAC) 규제가 바람직
- (미국) 미국도 역사적인 어획국, 미조업국의 시각이 객관성 제공
- (페루, 에콰도르) 연안개도국 어업 개발권에 대한 제한은 수용 불가

## 2-2

# 제6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6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6th Annual Session of the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일시/장소 : 2021.02.18.~02.25(8일간), 화상회의

### 2. 참석규모

- 참가국 : NPFC 회원국 6여 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NGO, 업계 등 1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 외 18명

## II 회의 결과

### 1. 태평양 공치 TAC\* (CMM2019-08 일본 개정 제안서)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논의 배경) 태평양 공치의 자원상태가 악화되자 일본이 TAC를 193,678mt으로 감축하기를 제안

번호	의견 및 제안			
1	(일본) <sup>(1)</sup> 일본이 제안한 193,678mt TAC에 회원국들 반응 좋지 않아 새로운 수치 284,310mt 제안, <sup>(2)</sup> 공해(협약수역)-EEZ 비율*은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며 화상회의에서 협상 불가 입장 견지			
2	(중국) TAC 300,000mt 제안 →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일본이 반대하였으나, TAC 옵션 중 하나로 포함			
3	(한국) 과거 특정 연도의 각국 어획량을 특정 비율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국가 할당량 설정 제안			
4	• 옵션 3개 검토			
	번호	TAC	'18년도 어획량 감축률	할당량 100% 소진 시 TAC 초과율
	옵션1	300,000mt	45%	8.8%
	옵션2	300,000mt	40%	18.7%
옵션3	300,000mt	35%	28.6%	
5	(한국, 대만, 중국) 옵션2 선호 (일본) 현재 태평양 공치 체제에서 국가 할당량 100% 소진 시 현 TAC를 6.7% 초과하게 되며, 새로운 국가 할당량은 소진 시 신규 TAC를 초과할 확률이 6.7%를 지나치게 초과해서는 안 될 것**			
6	(일본) 새로운 제안			
	TAC	'18년도 어획량 감축률	할당량 100% 소진 시 TAC 초과율	
	333,750mt	40%	6.7%	
7	일본의 새로운 제안에 회원국 모두 동의			

○ (논의 내용)

\* 공해-EEZ 공치 TAC 비율 : 60 : 40

\*\* 일본 대표는 개정 할당량이 현재 TAC 초과율인 6.7%를 과도히 넘어가면 어민 등 국내 관계자들 설득이 어려움을 설명

○ (신규 쾡치 TAC)

TAC	공해-EEZ 비율	'18년 감축률	TAC 초과율	한국 할당량
333,750mt	60 : 40	40%	6.7%	12,455mt

○ (쾡치 CMM 기타 개정 논의 결과)

조항	논의 내용
제11항	일본의 8월 1일 이전 금어기 설정 제안이 있었으나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
제16항(신설)	2022년까지 태평양 쾡치 어획통제규칙(HCR) 수립을 위한 SC-TCC-COM 작업반 개설 규정. 본 작업반은 관리전략평가(MSE)를 통한 관리절차(MP) 수립을 고려. 사무국은 본 개발 절차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가 고용
제17항(신설)	바누아투의 제안으로 개도국 개발 열망을 인식한다는 문구 추가. 바누아투의 초기 제안의 의무적 성격(shall) 대신 권장(encouraged)으로 채택
제18항	개정된 쾡치 CMM은 2021년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

2. 기타 보존조치 개정 논의

CMM	내용
CMM2019-05 (북서태평양 저층어업 및 V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국가) 일본</li> <li>- (논의 배경) 북서태평양 수역에서 신규 VME 보호수역 설정 및 관련 보고 의무 강화 제안</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강화 : 어구 종류, VME 조우 일자/시간, 지표종 이름/체중 등 보고 요구사항 추가</li> <li>· VME 보호 수역 2개 추가 : Koko 해산, Colahan 해산</li> <li>· 북태평양 돛돔(armorhead) 조사계획 개정</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보고 어구 종류에 트롤(Trawl) 추가 제안</li> </ul> </li> </ul>

CMM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자망(gillnet)도 추가 제안</li> <li>· (일본) 트롤은 수용 가능하나 자망은 특징이 달라 반대</li> <li>· (미국) 우선 개정 동의 가능하나 추후 armorhead 논의 희망. 부속서6 (armorhead 조사계획)을 고려하여 본 CMM 효력발생일 앞당기길 희망</li> <li>- (논의 결과) 개정안을 채택하되, 모니터링 조사 관련 부속서6만 즉시 효력을 갖고 CMM의 나머지 부분은 NPFC 규정에 따라 채택 90일 후 효력 발생 합의</li> </ul>
<p>CMM2017-09 (공해승선검색 (HSB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국가) 캐나다</li> <li>- (논의 배경) 공해승선검색(HSBI) 시 검색관의 안전 개선을 위해 어선의 사다리 선상 비치 의무 및 사다리 규격을 내용으로 하는 부속서 추가 제안</li> <li>-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공해승선검색 시 검색관 안전 중요성에 공감 하며 본 제안서 지지</li> <li>· (중국) 반대. 북미지역 어선과 어선구조 달라 사다리 비치 의무화 어려워. 특정 사다리 규정 무리하게 요구 시 오히려 해상안전 해칠 수도 있으니 차라리 검색선에 사다리 비치하게 해야할 것</li> <li>· (대만) 사다리 비치 제안에 동의하나, 적용대상 선박을 1,000GT에서 250GT로 낮추어 적용범위 넓혀야 할 것</li> </ul> </li> <li>- (논의 결과)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무 강도를 낮추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다리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보장(shall ensure)해야 한다는 문구를 권장(encourage)한다는 표현으로 수정 등</li> <li>· 대만의 250GT 의견 관련, 일본은 1,000GT 이상 어선에 먼저 적용하고 추후 검토 후 필요시 소형 선박으로 확대 적용 제안</li> <li>· 본 사다리 요구사항은 회기간 논의 및 TCC를 통해 지속 논의 예정</li> </ul> </li> </ul>
<p>CMM2019-12(VM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국가) 캐나다</li> <li>- (논의 배경) VMS 적용대상, MTU 전송 실패 시 대응 방법 등 개정</li> <li>- (논의 결과) 본 제안서는 TCC에서부터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아 연례회의에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VMS 프로토콜이 본 CMM 개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본 프로토콜에 따라 VMS 정보 이용 및 제공 결정</li> </ul> </li> </ul>

CMM	내용
CMM2019-01 (선박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국가) 캐나다</li> <li>- (논의 배경) NPFC 선박등록 규정 개정 및 FAO 선박 마킹 규정 부속서로 추가 제안</li> <li>- (논의 내용) 한국, 일본, 중국 등 대다수 회원국들 본 제안서에 지지 혹은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li> <li>- (논의 결과) 회원국들의 검토 및 수정안을 반영하여 채택 * 수정 내용은 추후 번역하여 첨부 예정</li> </ul>
CMM2019-11 (정어리/살오징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국가) 일본</li> <li>- (논의 배경) 빨강오징어 조업선 증가 추세에 예방적 조치로 정어리, 살오징어와 함께 빨강오징어도 CMM2019-11 관리종으로 포함 제안</li> <li>- (논의 결과) 일본 제안서 그대로 채택</li> </ul>
CMM2019-07 (참고등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자) SC 의장</li> <li>- (제안 내용) 참고등어 조업 중 발생한 부수어획 보고(체중, 어종) 규정 추가</li> <li>- (논의 결과) 회원국들은 본 제안이 절차를 무시하고 갑작스레 등장했음을 지적하고, 논의 시간이 없었으니 다음 회의에서 논의 결정</li> </ul>

## 2-3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회의명 영문) Intersessional Meeting of ICCAT Panel 2
- 일시/장소 : 2021.3.2.~3.5(4일)/화상회의
- 의장 : Mr. Ota Shingo(일본)

#### 2. 참석규모

- 참가국 : 16개 회원국(EU, 일본, 모로코, 알제리,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옵서버 등 약 12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수석대표) 외 9명



## II 회의 결과

### 1. 조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주요 검토사항
  - 혼획 쿼터(제38항), 어획능력 증가 제한(제20항), 어획능력표 수치 등
- 한국 조업계획서 주요 내용
  - (쿼터) 2021년 조정 쿼터 254.3톤\* (혼획 유보 쿼터 0.5톤 포함)  
\* 기본 쿼터 200톤 + 대만으로부터 50톤 전배 + '20년 미소진 쿼터 4.3톤 이월
  - (조업선) 3~4척 \* '18~'20년에 3척(사조산업 2, 동원산업 1) 조업
  - (어기/어장) '21.9.1~'21.11.30 / 서경 10도 이서, 북위 42도 이북 해역
  - (최소크기) 체중 30kg 미만 또는 가랑이 체장 115cm 미만
  - (VMS) 매 2시간마다 한국 FMC 및 ICCAT 사무국에 송신
  - (어획보고) 과학원 및 FMC에 일일 보고, 사무국에 주간·월간 보고
  - (전재) 다카, 카보베르데, 케이프타운 입항 전재 (해상 전재 금지)
  - (옵서버) 조업일수 20% 이상 승선·관찰
  - (기타) GBYP의 일환으로 옵서버에 의한 태깅 수행

○ CPC 조업계획서 주요 내용

CPC	조정 쿼터(t)	흔획 쿼터(t)	조업선	어기	비고
알바니아	169	1	선망 2	5.26 ~ 7.1	• 기상 악화시 어기 10일 연장
알제리	1650	5	선망 30	5.26 ~ 7.1	• 허가 선박 외 어획, 보유 금지
중국	101	1	연승 2	9월말 시작	• 다카항에서 양륙 (전재 금지)
이집트	326.7	3.3	선망 2	5.15 ~ 7.1	• 기상 악화시 어기 10일 연장
EU	18,651.25	672.69	선망 70 연승 197 미끼 76 손낚시 60 트롤 57 통발 13 소형 1022 기타 74	5.26 ~ 7.1 * 아드리아해 : ~ 7.15	• 조업국(8개) : 스페인,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몰타,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 레저 쿼터 136.06톤 • 기상 악화시 어기 10일 연장
아이슬란드	215	10	연승 2	8.1 ~ 12.31	• 폐기 금지, 모든 어획 양륙 의무
일본	2861.64	1	연승 40	9월말 시작	• 폐기량 14톤 유보 • 외국 항구 양륙 금지, 일본 지정항구(10개)에서 100% 검색
한국	253.8	0.5	연승 4	9.1 ~ 11.30	• 허가 선박 외 어획, 보유 금지 • 전재 항구 : 케이프타운, 카보베르데 또는 다카
리비아	2235	20	선망 15	5.26 ~ 7.1	• 기상 악화시 어기 10일

CPC	조정 쿼터(t)	흔획 쿼터(t)	조업선	어기	비고
				* FAO 37.3.1,2 : 5.15 ~ 7.1	연장
모로코	3318.91	434.91	통발 18 선망 4	5.15 ~ 7.1 * 모로코 해역 : 5.1 ~ 6.15 * 통발 조업 : 4.1 ~ 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량 20톤 유보</li> <li>• 축양장 1개소 운영 (투입량 2,884톤)</li> </ul>
노르웨이	282	15	선망 8 연승 3	(선망) : 6.25 ~ 7.15 (연승) : 5.13 ~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저 쿼터 6톤, 연구 쿼터 18톤, 태깅·방류 4톤</li> <li>• 어획능력 제한 면제(제22항)</li> </ul>
시리아	79.2	0.8	선망 1	5.1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불참</li> </ul>
튀니지	2650	26.55	선망 49	5.2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 악화시 어기 10일 연장</li> <li>• 국내 과학 옵서버 승선율 10%</li> </ul>
터키	2300	5	선망 33	5.1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 악화시 어기 10일 연장</li> <li>• 축양장 6개소 운영(투입량 2,320톤)</li> </ul>
대만	40	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50톤 전배</li> </ul>
영국	28.65	2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조업 금지</li> <li>• 태깅 방류 프로그램 실시</li> </ul>

## 2. 최적 어획량

### ○ (논의배경)

- '09년 SCRS는 선박 유형 및 전장에 따라 선박 1척이 어획할 수 있는 적절한 참다랑어 어획량인 최적 어획량\*을 정의하였음

\* 2009년 과학위에서 정의된 최적 어획량 (best catch rates) (t)

선박 유형	40m 초과 선망	24m-40m 선망	24m 미만 선망	40m 초과 연승	24m-40m 연승	24m 미만 연승	미끼 어선	핸드 라인	트롤	통발	기타
최적 어획량	70.7	49.78	33.68	25	5.68	5	19.8	5	10	130	5

- 최적 어획량은 조업계획 검토 시 CPC 선단 능력이 CPC 쿼터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함(권고 19-04 제4항 요구)
- 그러나, '09년에 마련된 이 정의가 현재의 조업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 권고 19-04항에 일정 및 요청사항이 명시됨

### '09년 최적 어획량의 문제점

- (1) 해역별 자원분포량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어획량 설정  
 ※ 노르웨이는 자국 EEZ 내 자원의 분포량, 회유 양상 등이 지중해와 상이함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통해 '09년 최적 어획량 적용 면제 승인(제22항)
  - (2) 본 수치는 자원량이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었던 당시('09) 기준으로 마련
  - (3) 공동조업활동(JFO)에서 참다랑어를 실제로 어획한 조업선만이 아닌 JFO에 참여한 모든 선박에 어획량이 귀속되는 것으로 산정
- (2), (3)으로 인해 현재의 선단별 가능(예상) 어획량보다 매우 낮게 설정된 '09년 최적 어획량을, 지중해 선망 CPC들(알제리, 터키 등)은 더 많은 선박을 투입하는 근거로 사용

### 권고 19-04 제18항

각 CPC는 2009년 SCRS에 의해 제안되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관련 선단 및 어구별 연간 어획량을 사용하여 자국에 할당된 쿼터와 부합하도록 어획능력을 조정해야 한다. 이 한도량은 늦어도 2019년에는, 또한 동부 참다랑어에 대한 자원평가가 실시될 때마다 SCRS에 의해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 검토에는 어구 및 해역별 구체적인 한도량이 포함 되어야 한다.

#### ○ (작업계획) : SCRS 회의를 거쳐 '21년 총회 제출을 목표로 작업

- SCRS는 패널2에 의해 요청된 최적 어획량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어획량은 명목 CPUE로 정의하고,
- 사무국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선박별 명목 CPUE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 및 어획 데이터 통합 수행
  - \* 사무국 보유 자료 : 1) 주간 어획보고('08-'20) 2) eBCD('16-'20) 3) VMS 데이터
- eBCD 및 VMS 데이터를 통해 어획이 이루어진 해역을 확인하여 선박 유형별 시·공간적 명목 CPUE 산출
- 공동조업활동(JPO)의 경우, 실조업선은 1척임에도 “할당비율”에 따라 어획량을 분배하여 귀속시키는 실행을 고려하지 않고, VMS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어획을 수행하는 조업선을 확인

### 3. 어획능력 증가 제한

#### ○ (논의배경)

- '18년 연례회의에서 선망선의 어획능력 증가는 '18년을 기준으로 최대 20%까지로 제한(18-02, 19-04 제20항)하기로 합의

- 개발도상 CPC의 경우, 쿼터의 완전소진을 위해 어획능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면, 본 제한에 대한 면제 부여(동 권고 제22항)
- 금번 패널2 회의에서 알제리와 터키는 '18년 대비 20%를 초과하는 어획능력 증가 승인을 요청하였고, EU가 이에 대해 문제 제기

[ 연도별 알제리·터키 BFT 선망선 척수 ]

CPC	2018	2019	2020	2021	'21/'18 증가율
알제리	14	22	26	30	114%
터키	22	29	27	36	64%

○ (논의결과)

- (알제리) 작년 기상 악화로 인해 어기 연장을 요청하였고, 자국 선박들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언급하며 28척으로 수정
- (터키) 작년에도 36척으로 조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실제로는 27척이 조업하였고,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될 가능성과, 근본적으로 최적 어획량 수치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 32척으로 수정
- (EU) SCRS에서 새로운 최적 어획량 수치를 마련하면, 모든 CPC들의 어획능력은 동 수치와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어획능력이 역사적인 권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님을 언급

#### 4. 북방 날개다랑어 비상상황 절차 초안

##### ○ (논의배경)

- 권고 17-04는 SCRS에 비상상황 판단 기준의 개발을 요청하여, SCRS 자원평가방법 작업반(WGSAM) 및 과학자와 관리자 간 대화 증진 작업반(SWGSM)에서 비상상황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음

##### ‘비상상황’ 판단 기준

- 1) MSE(관리전략평가) 과정에서, 자원상태가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 예상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 2) HCR(어획통제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 본 기준을 토대로 패널2는 비상상황 판단을 위한 지표 목록\* 초안을 마련(20년)하였고, 이에 대한 SCRS의 검토를 요청하였음. SCRS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에 대해 금번 패널2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함

##### ○ (논의결과)

##### 1) ‘전 범위’의 의미

- CPUE가 ‘전 범위’ 밖에 있을 경우와 관련, ‘전 범위’의 의미\*에 대해 올해 과학위에서 논의하여 지표를 보다 구체화할 예정

\* 데이터 값의 90%, 95%, 100% 등 특정한 수치로 아직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학위는 유연한 해석을 할 것임을 언급

## 2) 원칙 3(TAC 이행) 유지 필요성

- 미국은 특정 연도 총어획이 TAC를 초과할 경우, 시행 중인 MP의 계속 여부의 적절성을 제기, EU·캐나다도 MP와는 별도로 매년 TAC 초과 여부에 대한 평가 필요성에 동의하여, 원칙 3) 유지 결정
- 의장은 심각한 보고 불이행 및 TAC 초과 상황도 과학위 검토에서 고려되고 있으므로 원칙 3)은 불필요함을 언급
- 과학위는 TAC 초과에 대한 검토는 비상상황 발생 여부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 발생의 정도를 평가하는 사안이 됨을 언급. 또한, 이월에 대한 검토는 현재 및 과거의 이월 규정까지도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

## 3) 향후 작업 일정

- 작년에 마련된 초안 중, 지표 목록은 금번 회의를 통해 내용이 확정되었고, 메타룰\*에 대해서는 회기간 CPC 의견을 반영한 초안을 날개다랑어 작업반(6월)에서 검토 후, 과학위-패널2 간 양방향 작업 진행
  - \*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 전개 과정 및 패널2에 요구되는 대응 절차
- 미국, EU 및 의장은 비상상황 절차가 확정·채택되지 않아도 MP 채택은 일정('21년 총회 채택)대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언급

## 5. 축양장 참다랑어 성장률

### ○ (논의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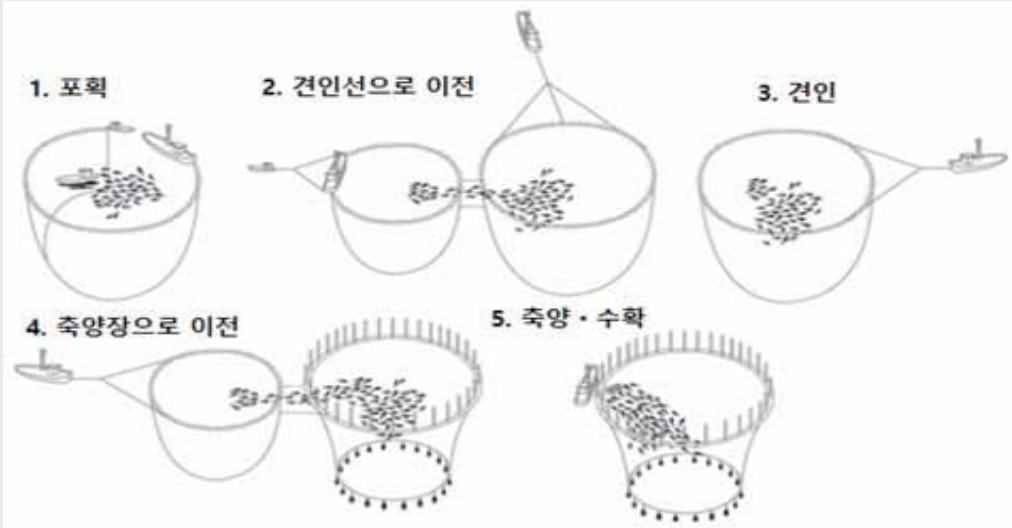
- 권고 18-02 제28항에서 SCRS는 '09년에 마련된 축양 기간 중 참다랑어 성장률을 업데이트할 것이 요청되고 있음. SCRS 참다랑어 작업반에서 본 사안에 대한 검토 중 아래의 질문이 제기됨 :

(질문) 선망선에 의해 포획된 참다랑어 치어는 견인선 가두리로 이전된 후 축양장으로 견인되는 기간 (몇일-1달) 중 체중이 감소함. 그렇다면, 성장률 측정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는가?

\* 1) 선망선에 의해 포획되는 시점, 2) 축양장 가두리에 투입되는 시점



### 참다랑어 이전 과정



\* 그림 출처 : <https://asbtia.com.au/from-ocean-to-plate> (호주 남방참다랑어협회)

- 축양을 위한 참다랑어는 야생에서 선망선에 의해 포획된 후, 견인선의 가두리로 이전\* 되어 축양장으로 견인됨 (소요기간 : 몇일 - 1달)

\* 선망선 > 견인선 이전 과정에서는 수중 스테레오 카메라에 의해 어류의 미수만 집계됨

- 견인선 가두리 > 축양장 가두리 이전 과정에서는 미수에 대한 집계와 (최소 20%의 어류에 대해) 카메라에 의한 체장 측정으로 체중의 추정(환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추정된 평균 체중을 통해 산출된 총어획량 범위 값이 사전 보고된 어획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만큼 방류가 실시되어야 하고, 이 과정도 수중 카메라에 의해 녹화됨

○ (논의결과)

1) SCRS 질문에 대한 패널2 답변

- 축양 후 수확된 어류는 체중의 실측이 이루어지지만, 축양을 위해 가두리에 투입되는 어류의 체중은 2가지 방법\*에 의해 추정되고 있음
  - \* 1. 수중 카메라로 체장을 측정한 후 체장-체중 변환공식(야생 어류 기준)으로 추정, 2. 수중에서 직접 목측으로 체중을 추정
- 포획된 후 축양장으로 견인되는 시간 동안 어류의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면, 2번 방법에 의한 값은 1)번 방법에 의한 값보다 적게 됨
- 2번 방법을 사용하여 가두리에 투입되는 참다랑어의 체중을 파악할 경우, 축양 기간 중 성장률은 과대평가\*될 수 있음

〈 시점별 참다랑어 체중 및 성장률 비교 〉

포획	가두리 투입 (추정법)	수확	성장률
40kg	40kg (체장 환산)	90kg	125%
	30kg (체중 목측)	90kg	200%

\* 또한, 야생에서 포획되는 참다랑어 양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TAC 초과 발생 우려

- 2번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포획 후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중 감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변환 공식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작업 필요
- 그러므로, 가두리에 투입되는 참다랑어의 체장을 수중 카메라에 의해 측정한 후, 체장-체중 환산 공식으로 체중을 추정하는 1번 방법을 사용할 것을 SCRS에 권고하기로 합의함
- 결국, SCRS의 질문은 성장률 파악을 위한 초기 체중의 측정 시점(포획시 또는 가두리 투입시)이었으나, 이는 체중 추정 방법에 대한 질문이고,
- 이에 대한 답변은 ‘포획 시점’으로 파악해야 하고, 추정 방법은 가두리 투입 시점에서의 체중 목측이 아닌, 수중 카메라를 통한 체장 측정 후 체장-체중 환산 공식에 의한 체중 추정임

## 2) SCRS 작업 경과 보고

- GBYP(대서양 전역 참다랑어 연구 프로그램) 조정관은 축양 기간 중 성장률 업데이트 작업 방법\*, 초기결과 및 향후 작업계획\*\*을 보고하였음

\* 1) 태깅을 통한 개별 어류 성장률 측정, 2) 선별된 가두리에 대한 수중 모니터링, 3) 가두리 투입 시점의 체중 및 수확 시점의 체중 비교 (eBCD 사용)

\*\* (단기계획) 음향표지(acoustic tag) 및 수중 청음기(hydrophone) 사용  
(장기계획) 수중 카메라 · eBCD · ROP · VMS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 튀니지는 스트레스가 어류의 성장 및 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고, 조정관은 질문이 연구범위 밖의 사항이나 유용한 정보가 도출될 수도 있음을 언급함

- 리비아는 수온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고, 조정관은 수온, 어분 등 해역별로 상이한 요소들의 영향이 분석될 것임을 언급함

- 모로코는 포르투갈 통발에서 포획된 어류의 높은 성장률(80%)에 대해 질문하였고, 조정관은 동 어류는 지중해를 떠나는 치어들로서,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초기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함

- 미국은 본 연구가 요청되고 있는 작업(축양 기간 중 성장률 파악)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질문하였고, 의장은 연구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임과, 체중 추정을 위한 다른 방법도 모색이 필요함을 언급함

\* 포획 시점의 체중 추정이 아닌, 인공지능(AI)을 통한 직접 측정

- 일본 회사 NEC 및 Yanmar는 AI를 이용하여 어류의 미수 집계 및 체장 추정을 하는 기술을 소개하였고, 동 기술이 이전되는 모든 어류에 대한 자동적인 집계 · 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을 언급함

## 6. 참다랑어 관리전략평가(MSE) 진행 경과

연도	주요 작업 계획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모델 기준표 채택 및 수정 (최신의 업데이트된 지표 반영)</li> <li>• 가중치 설계 및 타당성 검토</li> <li>• MSE 코드에 대한 독립된 외부심사 착수</li> <li>• 6개의 독립된 개발팀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지표 및 모델에 토대를 둔 예비후보절차 (CMP)들의 개선</li> <li>• SCRS에 의해 승인되고 패널2에 제출될 한정된 수의 CMP 선택</li> <li>• '21년 총회에서 패널2와 대화 (초기 CMP들의 목적은 MSE 과정 및 내재된 관리 trade-off를 설명하고, CMP들의 수용가능성을 타진,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권고를 요청하는 것)</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trade-off들에 대한 수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초기 CMP들의 개선 (패널2와 추가적인 대화)</li> <li>• 비상상황 절차규정 개발에 관한 지침 마련 ('23년 말까지 완료)</li> <li>• 3개 이하의 CMP를 '22년 총회 채택을 위해 제출 ('23년 TAC 결정)</li> </ul>

### ○ 주요의견

#### 1) 작업계획

- (EU) 수정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관리절차(CMP)들에 대한 관리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개발 작업 전에 제공 필요
- (MSE 회의) 위원회 회의\* 개최 전, 패널2 참다랑어 MSE 회의를 개최(11.12, 1일)하여 개발 중인 CMP들에 대한 관리자-과학자 간 대화 진행

\* 제27차 ICCAT 정기회의 : '21.11.13~11.22

## 2) 동·서부 계군 간 ‘혼합(mixing)’ 이슈

- (노르웨이) 두 계군의 현격한 자원량 차이 및 계군 간 혼합 이슈로 인해 MSE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자원평가 방법으로 돌아가는 플랜 B가 필요함을 언급함
- (캐나다) 본 작업이 날개다랑어와는 달리, 단일 계군 및 단일 수역 관리방식을 혼합 계군·다수역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을 언급, 관리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함
- (EU) SCRS가 각 계군(각 관리수역)별 CMP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 (SCRS) 각 수역에 대한 각각의 관리 조언이 제공될 예정이지만, 운영모델에서는 두 계군이 생물학적으로 연결됨을 언급함

## 2-4

# 제25차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연례회의

##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5차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25TH SESSION OF THE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일시/장소 : 2021.05.30.~06.11(13일간), 화상회의

#### 2. 참석규모

- 참가국 : IOTC 회원국 30여 개국(한국, 일본, 호주, 몰디브, EU 등) 및 NGO, 업계 2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수석대표 오성택 사무관 외 14명

## II 회의 결과

### 1. 황다랑어 회복계획 조치(결의 19/01)

- (논의 배경)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의 지속적인 악화와 결의19/01에 따른 어획량 감축에 면제되는 국가들로 인하여 자원회복 노력의 효과 감소
- (논의 내용)

번호	논의 내용								
1	<p>연례회의 시작 전 EU와 몰디브는 각각 황다랑어 조치 개정안을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양 조업국 어획 감축률 : (EU) 20% vs (몰디브) 35%</li> <li>(2) 공급선 이용 : (EU) 어선 5척당 2척 vs (몰디브) '24년부터 공급선 전면금지</li> <li>* 두 제안서 모두 R19/01의 면제조항을 없애고 전 수역과 전 어업을 감축 대상으로 포함</li> </ul> </li> <li>- 회원국 주요 의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세이셸</td> <td>'14년도 SIDS의 선단 발전 상태를 고려하여 SIDS의 기준년도를 '17-'19년으로 변경 요청</td> </tr> <tr> <td>한국</td> <td>R19/01 이행상태 고려하여 감축률 차등 설정 주장</td> </tr> <tr> <td>인도, 파키스탄 등</td> <td>자국 EEZ 내 소규모 영세어업은 면제 필요</td> </tr> <tr> <td>오만</td> <td>어떠한 제안서도 수용 불가하며 거부권 행사할 것</td> </tr> </table> </li> </ul>	세이셸	'14년도 SIDS의 선단 발전 상태를 고려하여 SIDS의 기준년도를 '17-'19년으로 변경 요청	한국	R19/01 이행상태 고려하여 감축률 차등 설정 주장	인도, 파키스탄 등	자국 EEZ 내 소규모 영세어업은 면제 필요	오만	어떠한 제안서도 수용 불가하며 거부권 행사할 것
세이셸	'14년도 SIDS의 선단 발전 상태를 고려하여 SIDS의 기준년도를 '17-'19년으로 변경 요청								
한국	R19/01 이행상태 고려하여 감축률 차등 설정 주장								
인도, 파키스탄 등	자국 EEZ 내 소규모 영세어업은 면제 필요								
오만	어떠한 제안서도 수용 불가하며 거부권 행사할 것								
2	EU와 몰디브는 양자 협의를 통해 제안서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 도출 실패								
3	<p>회의 4일 차에 EU와 몰디브는 각각 개정안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는 개정본에서 한국을 위한 조항*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척 이하 선망선을 운영하는 CPC는 '14년도 수준에서 선망 어업량 15% 감축</li> </ul> </li> <li>- 두 제안서 모두 세이셸의 요청 반영(기준년도 '14년 → '17-'19년 변경)</li> <li>- 남아공, 중국, 호주 등 국가들은 몰디브 제안서로 논의 주장, 한국은 EU 제안서 지지</li> </ul>								
4	<p>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의장은 어획 감축률만 개정하기를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EU, 몰디브, 한국이 삼자 회의를 통해 개정 초안 작성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적은 어획량에도 불구하고 R19/01 이행을 위해 선망 노력량 60%를 감축하는 등 회복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니 추가 감축은 수용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li> </ul> </li> </ul>								

번호	논의 내용
5	마지막 날 총회 시작 전 EU, 몰디브, 한국의 삼자 회의 시작 - 한국은 몰디브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14년도 전체 어획량의 13% 감축을 결정* * 이전 조치(R19/01)에서는 어구별 감축률이 별개 설정되어 한국은 선망 어업만 15% 감축 - EU와 몰디브는 EU의 어획 감축률에 합의 도출 실패* * (EU) 20%가 마지노선, (몰디브) 23% 주장
6	총회에서 EU와 몰디브는 EU의 감축률을 21%로 합의 후 조치 개정안 채택
7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마다가스카, 오만 등 5개국 거부권 행사

○ (주요 개정내용)

조항	개정 내용
제1항	본 결의는 IOTC 협약수역 내 모든 CPCs에게 적용
제5항	'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000mt 이상인 국가는 '14년 수준에서 21% 감축 - 연안 개도국은 12% 감축 - SIDS는 10% 감축
제6항	'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000mt 이하이고 '17-'19년 어획량이 5,000mt 이상인 국가는 '14년 수준에서 21% 감축 - 연안 개도국은 '17-'19년 수준에서 12% 감축 - SIDS는 '17-'19년 평균 또는 '18년 수준 중 높은 수치에서 10% 감축
제7항	'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000mt 이하이고 '17-'19년 어획량이 2,000~5,000mt 사이인 국가는 '17-'19년 중 최고치 초과 금지
제8항	'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000mt 이하이고 '17-'19년 어획량이 2,000mt 이하인 국가는 2,000mt 초과 금지
9bis*	5항의 어획감축 적용 시, '17-'19년 평균 어획량이 10,000mt 미만인 원양 조업국은 '14년 수준에서 13% 감축

\* (9bis) 한국에게만 적용



## 2. FAD 조치(결의 19/02) 개정 논의(미채택)

- (논의 배경) 케냐 등 연안국은 DFAD 수 감축 등을 제안한 FAD 관리조치 개정안을 제출
- (논의 내용)

번호	논의 내용
1	케냐 등 연안국은 DAFD 수 감축, 금어기, 공급선 금지 등을 제안한 개정안 제출 - 한국, 일본, EU 등 국가는 개정 제안의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고, 본 논의는 10월 개최될 FAD 작업반 논의 후 진행해야 함을 주장 - 케냐 등 제안국은 다른 RFMOs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방적 조치로 FAD 금어기 등을 채택하였음을 지적
2	몰디브 등 국가는 FAD 작업반 관련 EU의 제안에 대하여 회의론 제기 - 지난 6년간 FADWG은 한 번 개최되었으며 위원회에 권고 제공도 실패
3	총회 4일 차에 FAD 소작업반 개최 - 몰디브는 사무국에 IOTC가 FAD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질의 → 사무국은 데이터가 있지만, 관련 규정(R19/02 24항)에 따라 이행평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함을 설명
4	마지막 날 케냐 등 제안국들은 개정 제안서를 소개 후 투표로 채택 강행
5	투표 결과 - 회의에 참석한 총 19개국 회원국 중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전체 30개 회원국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채택 무산

- (논의 결과) 투표 결과 발표 후 호주는 IOTC 투표 규정에 따르면 기권이 불가함을 주장
  - 이에 논란이 일자 본 사안은 FAO 법률 자문에게 문의하기로 결정

### 3. 기타 결의안 개정 논의

결의	내용				
결의16/02 - 가다랑어 어획통제규칙(H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국가) EU, 몰디브</li> <li style="padding-left: 20px;">* EU, 몰디브 각자 제안서 제출</li> <li>- (논의 배경) 가다랑어 어획한도의 지속적인 초과가 발생하자 HCR에 따른 가다랑어 관리목표 준수 필요성 제기</li> <li>-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제안서 주요 제안</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EU 제안서</th> <th style="width: 50%;">몰디브 제안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13,572mt 어획한도 설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향후 HCR에 따른 어획한도 유지를 보장하는 CMM 채택</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25는 황다랑어 논의를 우선하여 가다랑어 제안서에 대한 심층 논의 불가</li> <li>- (논의 결과) 몰디브 개정안 문구를 shall에서 may로 바꾸어 채택</li> </ul>	EU 제안서	몰디브 제안서	513,572mt 어획한도 설정	향후 HCR에 따른 어획한도 유지를 보장하는 CMM 채택
EU 제안서	몰디브 제안서				
513,572mt 어획한도 설정	향후 HCR에 따른 어획한도 유지를 보장하는 CMM 채택				
결의13/04 - 고래목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국가) 한국</li> <li>- (논의 배경) 한국은 선망 어업에만 적용되는 고래목 보호 조치를 예방적 조치로서 연승 어업에도 적용 제안</li> <li>-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예방적 조치 원칙에 동의하나 본 원칙은 자원상태가 위험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함. 인도양 고래목은 위험하지 않음</li> <li>· (몰디브) 제안서에 동의하나 예방적 조치 주장에 다중잠대 적용하는 모습에 우려</li> <li>· (EU, 영국, 호주 등) 본 개정안에 지지하며, 자망 등 기타 어구도 포함 주장</li> </ul> </li> <li>- (논의 결과) 논의 시간 부족으로 회기간 논의 지속 결정</li> </ul>				
결의19/06 - 대형어선 전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 국가) 인도네시아</li> <li>- (논의 배경) 인도네시아 목재 운반선 관련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ROP와 통합을 제안</li> <li>-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이행위에서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의 ROP 통합은 불가 결정</li> <li>→ 이에 인도네시아는 R19/06 부속서5의 인니 목재 운반선 수를 8척에서 12척으로 증가하고 시범사업 기한을 3년('21~'23) 연장 제안</li> </ul> </li> <li>- (논의 결과) 인도네시아의 개정안 채택</li> </ul>				

2-5

제97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특별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97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특별회의  
(회의명 영문)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97th Meeting (Extraordinary)
- 일시/장소 : 2021.06.07.~06.10(4일간), 화상회의
- 의장 : Mr. Alfonso Miranda (페루)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미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NGO 등 약 100여명
- 우리나라 대표단 : 수석대표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나일강 외 3명

## II 회의 결과

### 1. 선망 금어기 일수 제한 논의

- 부유물 세트 조업의 증가로 눈다랑어 치어 어획이 증가하고 있음
- 과학위 권고에 따르면 현재 금어기인 72일이 눈다랑어 자원량 상태를 유지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비적 접근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 미국이 금어기를 90일로 연장할 것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나 다수 회원국이 72일을 유지할 것 주장
  - 어획 노력 감소 양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코로나19의 여파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눈다랑어 어획 사망률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부유물 세트 설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 2. 부유물 세트 설치 제한 논의

- 개별 선박당 활성화 FAD 설치 개수 제한
  - EU/콜롬비아는 30% 감축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17-29% 감축 제안하여 논의하였음
- 생분해성 FAD 교체에 대한 논의
  - “생분해성”에 대한 분명한 정의 수립 필요
  - 과학위의 권고에 따르면 일반 FAD와 어획 능력 큰 차이 없음
- 회원국 간 의견 통합이 어려워 제안서를 통합하기 어려웠음
- 절충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원국 간 합의 도출

2-6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  
(회의명 영문) Intersessional Meeting of ICCAT Panel 1
- 일시/장소 : 2021.7.1.~7.2(2일)/화상회의
- 의장 : Dr. Shep Helguilé(코트디부아르)

2. 참석규모

- 참가국 : 26개 회원국, 3개 비회원국, 9개 NGO 등 약 15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 외 6명

## II 회의 결과

### 1. CPC 조업계획서 검토

- 미소진 어획한도 이월 (19-02 12항)
  - 미국은 중국과 대만이 미소진(19년) 어획한도 이월비율을 15%로 적용하고 있으나, 19-02의 명시된 허용 이월비율은 10%임을 지적
  - 일본은 19-02 12항(이월 조항)이 한도를 10%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 조항이 '16-01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월 비율 10% 적용 의견에 동의
  - 세네갈, 남아공, 니카라과는 이월 계산이 투명하지 않은 점\*과 눈다랑어 자원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원양조업국들만 이월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제기하고 향후 조치에서는 이월을 금지해야 함을 주장
  - 일본은 이월 계산의 투명성 필요에는 동의하였고 향후, 이월에 대해 논의는 가능하지만, 19년 회의에서 협상의 결과로 15%에서 10%로 감축된 점을 언급
- 지원선 척수 증가 제한 (19-02 23항)
  - 미국은 엘살바도르가 사용해온 파나마 지원선(3척) 중 1척을 엘살바도르로 기국 변경한 것은 지원선 척수 증가 제한(23항) 위반임을 지적
  - 일본은 증가 제한 기준 시점에 불분명함\*이 있고, 시점을 '채택'이 아닌 '발효'로 규정했어야 함을 언급하였으나, 미국 의견에 동의
    - \* 권고 채택 시점(19.11) 또는 권고 발효 시점(20.6). 23항은 전자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조항에 불분명함은 없으며, 다른 참치 기구들과는 달리 본 기구에서는 능력 제한이 전체가 아닌 CPC별로 적용됨을 주장
  - 엘살바도르는 지원선 1척을 기국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권고와 부합함을 주장

○ 의무적인 어획한도(hard limit) 없는 과테말라의 조업계획

- 미국은 과테말라가 4항 d)로 분류되어 의무적인 어획한도는 없지만, 1,827톤은 장려되고 있는 수준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는 19-02에 따른 책임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 과테말라는 사무국에서 집계한 최근 평균어획량인 911톤이 국내적인 판매기록과 상이하므로 동 수치를 어획한도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함

- 과테말라는 치어 어획 감소 노력과 연안개도국으로서 어업개발권이 있음을 언급

○ 조업계획서 미제출

- 일본은 최근 평균어획량 1,000톤을 초과하는 카보베르데, 기니, 파나마, 필리핀이 조업계획서를 미제출하고 있는 것은 22항 위반임을 지적

- 의장은 사무국이 조업계획 제출을 독려하는 서한을 발송하도록 함

2. FAD 세트 수 제한

○ 과학위 조언

- 의장은 과학위에 31항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FAD 세트 수 제한에 관한 조언 제공이 가능한지 질문

- 과학위 의장은 FAD 금어기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치어 어획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눈다랑어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하기 어려워 FAD 세트 수 제한에 관해 현 시점에서는 조언 제공이 불가하고,

- 조언 제공을 위해서는 매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나, 일부 CPC들이 정보를 미제출하고 있고, 데이터 기밀 이슈도 있음을 언급

- FAD 개수를 감소해도 세트 수를 증가하면 노력 감소가 아님을 지적

## ○ 주요 의견

- EU는 의견서를 통해 FAD 세트 수 제한 필요성을 제시\*

\* 1) FAD 개수와 어획노력 간 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

2) 선박 간 FAD 공유로 개수 제한은 무의미

3) FAD 개수 확인은 그 자체가 어렵고, 운항자들과 상업적 이해관계에 있는 부이 제공자들의 데이터에 의존하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세트 수는 옵서버에 의해 확인되므로 파악이 용이하고 신뢰성이 보다 높음

- 일본도 의견서를 통해 세트 수 제한 도입을 지지하고, 가봉, 캐나다, 영국도 필요성에 공감

- NGO 국제채낚기재단(IPNLF)은 의견서를 통해 세트 수 제한이 이론적으로는 좋으나, 이행 관련 어려움으로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

\* 1) 'FAD 세트'에 대한 정의 부재로 옵서버들이 FAD 조업과 비FAD 조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 (어군이 FAD와 관련 없기 위해서는 FAD로부터 거리가 2-5해리 필요)

2) WCPFC에서도 세트 수 제한을 도입했다가 감시의 어려움으로 폐지. ICCAT은 중앙 VMS와 선망 ROP가 부재하고, 데이터 미공유·미제출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세네갈은 세트 수 관찰을 위해서는 선내 옵서버가 필요하나, 연안개도국으로서 이행에 어려움이 있고, 세트 수 제한 논의는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옵서버프로그램 (ROP)과 같이 논의 진행되어야 함을 언급

## ○ 정보 제출

- 일본은 31항의 요구사항인 FAD 세트 정보 제출 이행상황을 질문

- 사무국은 '19년도에는 과테말라와 파나마가 미제출하였고, 과거 연도 중 누락된 데이터 및 제출하다가 제출이 중단된 CPC도 있음을 확인

- 일본은 최근 연도의 데이터 제출이 이루어져도 역사적인 데이터의 부재로 과학위의 작업이 어려울 것임과, 미제출 CPC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리 기준이 필요함을 언급



- 남아공은 과학위가 분석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요구해야 하고, 데이터 제출에 관계 없이 연안개도국에 대한 고려는 필요함을 언급
- 엘살바도르는 과학위가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
- 미국은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혼란이 있는 점에 짜증을 표명하고, FAD 데이터 제출은 '14년도부터 요구되고 있음을 언급
- 과학위는 CPC들의 정보 제출이 점점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개선이 지속되면 1-2년 내에는 결론 도출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 현재 단위면적당 FAD 개수 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세트 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어획 노력 파악이 가능하고, 치어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종과 체장 정보가 필요하며,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가 분석에 유용함을 언급
- 사무국이 패널1, 이행위, 과학위 의장과 협의하여 미제출 CPC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명시하여 제출을 독려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함

### 3. FAD 개수 제한 및 금어기\*

\* '21년 : 척당 300개(작동 중인 부이), 1-3월

#### ○ FAD 개수 제한

- 가봉은 FAD 세트 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새로운 FAD 개수 제한을 정하지 못하는 것인가를 질문
- 세네갈은 정보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유지를 할 것은 아니고,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FAD 개수 감축이 필요함을 주장
- 남아공과 미국도 선망선들이 실제로 300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고 개수의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함을 주장

\* 과학위에 따르면, 선망선 1척이 추적하고 있는 d-FAD 개수는 약 35-50개

- EU는 이에 대해, 현행 조치가 모든 참치 기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개수임을 강조하고, 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 전에 새로운 조치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고, 논의가 필요한 다른 사안(타 어법, MCS 등)도 있음을 언급
- 엘살바도르도 '22년 FAD 개수 제한을 300개로 유지할 것을 주장
- 의장은 FAD 개수에 대한 과학위의 추가 조언이 있기 전까지 300개로 유지하기로 함을 언급

#### ○ FAD 금어기

- 엘살바도르, 퀴라소, 파나마는 현행 조치 3개월은 과도한 조치로서, 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과 개도국 어업개발권을 언급하며 현행 조치의 연장에 반대
- 가봉은 과학위가 '19년 전에도 금어기 2개월이 점진적으로 길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었음을 언급하고 현행 3개월 유지를 주장하였고, 미국, 캐나다, 남아공, 라이베리아도 이에 동의
- 일본은 과학위가 2차 회의(9월) 또는 연례회의(11월)에서 FAD 조치에 대한 조언 제공이 가능한지 질문하였고, 과학위는 '20년 데이터가 제출(7월말)된 후 2차 회의 전까지 분석할 시간이 없다고 답변
- 일본은 눈다랑어 자원평가 회의(7.19~29)에서 FAD에 관한 조언 마련이 가능한지 질문하였고, 과학위는 조언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답변
- EU와 엘살바도르는 FAD 외 모든 어획사망율에 대해 과학위가 조언할 것을 요청

### 4. 기타 FAD 조치

#### ○ FAD 부이 작동

- 미국은 '19년 회의에서 미채택된 부이 작동 조항\* 도입을 제안

\* 제20조의2. [FAD/부이]는 투척 시 선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회수 또는 분실될 때까지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행 조치에서 제30조의2로 삽입)

- 일본, EU, 가봉은 동의하였고, 세네갈은 이행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반대하였으나 반대를 철회하고 동의
- 금어기 중 FAD 부이 이전
  - EU는 FAD 금어기 중 부이 이전 작업도 금지되는지 질문
  - 가봉, 세네갈은 이전이 허용될 경우 FAD 조업에 유리한 여건이 되므로, 금어기 중에는 FAD 관련 모든 활동(이전, 작동 등)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EU는 답변을 수용
  - 캐나다는 FAD가 그냥 방치될 경우 환경 오염이 야기됨을 지적
- FAD 등록부 설치
  - EU는 FAD로 인한 환경 오염, FAD 회수, 타선박 FAD 사용 및 절도 등의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FAD 소유권 확립, 책임성 보장을 위해 참다랑어 축양장 등록부와 유사한 FAD 등록부 설치 논의를 제안
  - 캐나다는 등록처 운영 등 예산적인 함의를 고려할 필요를 언급
- 생분해성 FAD
  - 미국은 ‘생분해성’ 정의에 관한 지침의 필요성을 환기하였고, 비앵킴, 생분해성 FAD 데이터가 ’16년부터 요구되고 있으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서, 이행을 위한 지침이 필요함을 언급
  - EU는 미국 의견에 동의하였고, 일본은 입장을 유보

## 5. 감시·감독·통제(MCS) 조치

- MCS 논의
  - 미국, EU, 엘살바도르, 세네갈은 효과적인 MCS를 도입해야 하고, 다른 조치들과 함께 패키지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

- 일본, 중국, 한국은 IMM 회의에서 MCS 논의가 진행 중으로, IMM 회의에서 열대다량어 외 분야도 같이 포함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패널1에서 MCS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는 것에 반대
- 의장은 IMM 회의 결론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동 결론을 패널1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언급

#### ○ 능력 제한

- EU는 '15년 기준으로 모든 어법의 어획능력을 동결할 것을 제안
- 미국은 현재의 능력 제한 조항(22항)은 구체적인 수치 제한이 없음을 언급하고, TAC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있는 제한이 필요하며, 어법 중 영향이 가장 큰 선망선의 능력 동결이 중요함을 언급
- 세네갈은 능력 제한은 개도국의 어업개발권을 저해하므로 반대
- 일본은 능력 제한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최적어획량 추정, 연안개도국 고려)이 있으므로 논의가 시기상조일 수 있음을 언급
- 일본은 또한, 기준연도를 '15년으로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 '15-'19년 기간에 연승 어획량은 15% 감소했으나, 선망은 17% 증가했으므로 동일한 취급이 불가함을 언급

#### ○ 지원선(support vessel)

- 미국은 선망선 5척당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선을 1척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고, EU는 지원선 오퍼버 커버리지를 100%로 할 것을 제안
- 일본은 연승선에 물자를 공급하는 '공급선(supply vessel)'이 '지원선'에 포함되는지 질문하였고, EU는 선망선 지원선만 해당한다고 답변
- 가봉과 일본은 미국 제안에 동의

○ 입항 전제(20%) 실시

- EU는 현재 해상 전제 ROP는 어종, 어획량 검증이 부족하고,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미보고되는 해상 전제도 있으므로, 의무적인 입항 전제 실시(20%)를 주장
- 일본은 해상 전제 ROP의 커버리지는 100%이지만, 항구검색 비율은 5%이며, 연안국이 20%를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모니터링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임을 언급하며 반대하였고, 중국도 이에 동의
- 한국은 전제의 시기와 장소는 운항자와 선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효과적인 MCS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
- 미국은 항구 모니터링은 ROP 모니터링과는 다르고, 협약수역 내 불법어업이 여전히 있다고 언급

○ 열대다랑어 지역읍서버 프로그램(ROP)

- EU는 열대다랑어를 ROP 도입을 제안하였고, 이는 '11년에 이미 논의된 사안으로, 프로그램 적용 범위(어법)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
- 엘살바도르, 세네갈, 가봉은 EU 제안에 동의
- 일본은 ROP가 표층어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입장을 유보하고, 연승 커버리지 및 ROP 도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
- EU는 어법별 눈다랑어 어획비중이 표층어업 10%, 채낀기 16%, 연승 28%, FAD 32%로, 연승과 FAD의 비중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19년에 FAD 이외 이슈들은 별로 진전되지 않았고, 균형된 조치의 패키지가 필요함을 주장

○ 연안개도국 어업개발권

- 니카라과는 '19년 회의에서 연안개도국 어업개발권이 인정되었고, 어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불가했음을 언급
- 미국은 모든 조업은 19-02와 부합해야 함을 언급

2-7

제8차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당사국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8차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당사국 회의  
(회의명 영문) 8th Meeting of the Parties
- 일시/장소 : 2021.07.01.~07.09(8일간), 화상회의
- 의장 : Dr. Chumnam Pongsri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EU, 일본 등91개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NGO 등 약 100여명
- 우리나라 대표단 : 수석대표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오성택 외 5명

## II 회의 결과

### 1. 기존 보존관리조치 개정

- CMM 2019/02(데이터 표준) 보존관리조치 개정
  - 옵서버가 선박에 미승선한 경우 부수어획된 어류 중 절단된 저층 생물 분류군 및 해양 포유류, 바닷새 부수어획에 대한 정보 수집을 선원이 가능하게 하도록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일본이 선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여 개정에 실패 하였음
- CMM 2019/14(HSBI) 및 검색 절차 개정
  - HSBI 시행 관련한 조항 추가
  - HSBI을 위한 질문지를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할 경우 90일 이내에 완료하고 사무국에게 전달하여 회원국에게 회람될 수 있도록 할 것

### 2. 과학위 권고에 따른 과학 프로그램 구축

- 이빨고기 표지방류 프로그램 구축
  - CCAMLR 표지방류 프로그램 활용하면서 SIOFA만의 독립적인 태깅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성 확인
  - CAMLR-SIOFA 합동 작업반 필요성 동의
- SIOFA 저층 어업 발자국(footprint) 구축
  - 사무국과 과학위에게 CMM 2020/01 7항 및 데이터 관리 목적으로 세트별 정보(양송 개시 및 종료)에 따른; 20분 해상도; 30분 해상도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footprint 지도를 준비하며 이에 대한 활용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함

### 3. 2021년 IUU 선박 목록 추가 논의

#### ○ Mariam 1 (모리셔스)

- (논의배경) SIOFA 등록 선박 목록에 미등재된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어업한 기록에 따라 IUU 목록에 추가하기 위하여 논의
- (모리셔스 주장) 모리셔스 관할 수역인 Saya De Malha Bank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국내 VMS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조업이 아니었음
- (논의 내용) 호주 및 다양한 회원국은 모리셔스가 주장하는 Saya De Malha Bank 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 선박은 미등록 선박의 조업으로 최종 IUU 목록에 등재할 것 주장
- (논의 결과) 회원국 간 합의를 찾지 못하여 임시 IUU 목록에 추가하고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 할 것

#### ○ El Shaddai (남아공)

- (논의 배경) 미등록 선박으로 협약 수역 내에서 67일동안 어획하며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66톤을 어획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IUU 목록 추가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논의됨
- (남아공 주장)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논의 내용) EU는 남아공이 사무국에게 제공한 VMS 데이터에 따라 IUU 어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에서는 관련하여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논의결과) 다수 회원국이 해당 선박을 IUU목록에 추가할 것에 동의하였으나 몇몇 회원국이 남아공의 노력을 인정하며 임시 IUU 목록에 등재한 후 내년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



2-8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4 회기간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패널4 회기간 회의  
(회의명 영문) ICCAT Intersessional Meeting of Panel 4
- 일시/장소 : 2021.7.6.~7.8(3일)/화상회의
- 의장 : Mr. Raul Delgado(파나마)

2. 참석규모

- 참가국 : 21개 회원국, 12개 NGO 등 약 123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 외 1명

## II 회의 결과

### 1. 북대서양 청상아리 보존관리조치

#### ○ (논의 배경)

- 과학위는 ① 현재 자원상태가 초과어획, 과도어획 중일 가능성이 90%로서, ②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35년까지는 자원량 감소가 불가피하며, ③ 연 500톤을 어획할 경우 '70년까지 50% 이상의 가능성으로 자원회복이 가능하나, ④ 예외 없는 보유 금지 조치를 권고하였음
- '19, '20년 연례회의에서 미국, EU, 캐나다(공동)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패널4에서 논의되었으나, 보유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미합의
- 현 조치(19-06)에서는 TAC가 미설정된 채, 청상아리 보유가 가능한 5가지 경우들이 규정되어 있음

#### ○ (논의 경과)

- 이번 회의에서 미국, EU, 캐나다(공동)는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3개 제안서의 요소들을 통합한 의장 제안서를 토대로 논의 진행

**【3개 제안서 주요내용】**

구분	미국	EU	캐나다
보유	조건부 허용	조건부 허용	원칙적 금지
TAC	500톤	500톤	-
보유 허용 조건	① '13-'15년 평균어획량 85% 이상 감축 달성 ② 생존 여부가 옵서버에 의해 확인 ③ 최소 체장 : 남성 182cm 여성 280cm	① 올려졌을 때 죽은 상태	① 올려졌을 때 죽은 상태 ② 목표어업 금지 ③ 죽은 어류로부터 상업적 이익 획득 금지
어구 개량	① 모노필라멘트 목줄 ② 대형 환형 낚시	낚시줄에 소형 정보수집 장치 부착	-
기타 조치	① 안전 취급, 방류 지침 ② 피닝 금지	① 안전 취급, 방류 지침 ② 레저 어업의 어류 보유 금지 ③ 어획 및 폐기/방류 정보 월간보고 ④ 옵서버 커버리지(EM 포함) 23년까지 20%로 상향	① '22년까지 안전 취급, 방류 지침 채택 ② 남대서양 청상아리 TAC 2001톤

○ (논의 결과)

- 이전 회의들과 같이 주요요소들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 미성립. 미합의된 조항들을 괄호로 처리하고 회기간 서면 의견 교환 후 2차 화상회의(10.27)를 개최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함

## 2. 주요 쟁점 사항

### ○ 미국 제안서

쟁점 사항	주요 의견
생존 어류 보유	(EU, 일본, 캐나다) 생존 어류 보유에 반대 (미국) 최소 체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암컷 어류 보유는 매우 예외적으로 발생함
어획량('13-'15년) 85% 감축	(미국) 최근 자원평가('17년)의 토대가 된 '13-'15년이 가장 적절한 기준연도 (EU, 일본, 캐나다) 감축율 달성 여부 확인이 어려움
환형 낚시	<p>(EU) 환형 낚시 사용이 오히려 청상아리 어획율을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의견이 있음</p> <p>(미국) 어획율 증가는 미끼 효과로 인한 것이고, 환형 낚시 사용이 양승 중 청상아리 폐사율을 감소시킴</p> <p>(일본) 태평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형 낚시 사용이 청상아리 어획을 감소시킨다는 증거 없음 (우루과이, 노르웨이 동의)</p> <p>(과학위) 생태계 작업반 논의 결과 설명</p> <p>① 환형 낚시를 사용하면 J-후크에 비해 황새치 어획율은 감소하고, 청상아리 어획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 오차를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유의미한 것이 아님</p> <p>② 환형 낚시를 사용하면 J-후크에 비해 양승 시 청상아리 폐사율이 10% 감소하고, 이 결과는 유의미한 것임</p> <p>③ 환형 낚시는 거북 보존을 위해 표층 연승에서 사용이 권고되고, 다른 어종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해 환형 낚시 사용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p>
모노필라멘트 낚시줄 사용	(일본) 청상아리 보유 금지는 수용할 수 있으나, 청새리상어 어획량 감소는 수용 불가하므로 반대
피닝 금지	(일본)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대 (우루과이 동의)

○ EU 제안서

쟁점 사항	주요 의견
월간보고	(일본) 청상아리 어획량은 소량이므로 월간보고는 너무 빈번함
읍서버 커버리지	(일본, 한국, 대만) 커버리지는 IMM에서 논의되어야 함 (일본) 보유하고자 하는 CPC만 커버리지 상향해야 함 (모로코, 알제리) 소형 선박은 면제되어야 함 (EU, 미국) 수준과 기한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하나, 북대서양 연승조업선이 모두 청상아리와 접촉하므로 상향 필요
MCS 보고	(일본) 국가보고서가 아닌 상어 체크 시트를 통해 보고 필요
소형 데이터 수집 장치	(일본) 모든 어업에 관련되므로 패널4에서 논의 불가 (한국) 조치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조연 필요 (EU) 낚시 침강 시간과 청상아리 어획 간 관련성이 있음. 시범 사업을 통해 수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음

○ 캐나다(공동\*) 제안서 \* 가봉, 시에라리온, 영국, 세네갈, 대만, 기니비사우, 감비아

쟁점 사항	주요 의견
보유 금지	(캐나다) 어류 접촉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유 금지 필요 (일본) 당국과 어업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제안 지지 (EU) ① 보유를 금지하면 과학 데이터도 상실 ② 항차당 보유 미수(1-2미) 제한으로 어획 유인 제거 가능 ③ 이분법적 선택이 아닌 수용가능한 수준(위험성 50-60%) 제시 필요 (미국) 보유 금지만으로 자원회복 달성 불가. 추가조치 필요 (NGO) 과학위 조연과 부합하므로 제안 지지

○ 의장 제안서

쟁점 사항	주요 의견
회복 가능성	<p>(가봉)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가능성 논의에 반대                      (영국) 청상아리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하여 70%로 해야 함                      (노르웨이) 70%는 취약한 어종에 적용되는 수치임. 다른 어종, NOAA에 의해서도 적용되었음                      (EU) ① 회복 가능성 수치는 과학자가 아닌 관리자가 결정함 ② '19년 보고서에서 53%로 논의되었음. 보유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70%로 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수용 불가                      (일본) ICCAT은 50-60%를 사용해 왔고, 선례에 따라야 함</p>
TAC	<p>(미국) 500톤('70년까지 회복가능성 52%). 방류 후 폐사량은 TAC에서 제외                      (일본) TAC는 모든 폐사를 반영하는 개념이므로 방류 후 폐사도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 필요                      (영국) 죽은 폐기, 방류 후 폐사가 있으므로, 보유를 위한 TAC 설정은 과학위 조언과 부합하지 않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사량이 500톤이므로 보유 금지 필요함                      (PEW) '70년까지 회복가능성 60% 달성을 위해서는 300톤</p>
소형 선박 면제	<p>(모로코) 현행대로 12m 미만 선박들은 조치 면제 부여 필요                      (EU, 미국) 여러 가지 면제 부여에 우려</p>
안전취급 지침	<p>(과학위) ICCAT 매뉴얼에 선망을 위한 안전취급 지침은 있으나 연승은 없음. 과학위에서 논의는 가능하나 완료 시점은 불투명                      (캐나다) 연승 안전취급 지침이 마련되면 모든 상어에 적용 필요</p>
데이터 불확실성	<p>(EU) ① 어종의 생산성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데이터 불확실성이 언급되고 있음 ② 과학위에서 긴급한 정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가? 외부 심사가 필요한 것인가?                      (과학위) ① CPC들의 역사적 어획량 업데이트 필요 ② 상어 작업반에서 추가 논의 필요</p>

**\* 보존관리조치 12-2020 제4항**

대왕오징어를 제외하고, 전채 받는 선박(운반선)의 당국은, 전채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전채 실시 늦어도 7일 전까지 협약수역에서 어획된 수산자원의 전채가 이루어질 예정인 14일의 전채 기간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자원평가**

(미국) '27년이 아닌 '24년에 실시 필요 (가봉 동의)  
 (캐나다) 24년에 검토하기에는 데이터가 제한적임  
 (과학위) 상어종 자원평가 순서는 비약상어 > 청새리상어 > 청상아리임(6-7년 주기로 순환). 캐나다 지적이 맞음  
 (EU) 캐나다 의견에 공감. 이른 시기에 벤치마크 평가 제안

○ 일본의 '총허용보유량(Total Allowable Retention)' 제안

- (정의) 폐사 상태로 올려져서 폐기되는 양과 생존 방류된 어류 중 폐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양\*을 TAC에서 차감한 양

\* 과학위는 생존 방류되는 청상아리의 생존 가능성을 약 70%로 추정하고 있음  
 $[TAC] - [죽은 폐기량(DD)] - [생존방류량 \times 0.3(LRM)] = [TAR]$

\* DD : dead discards, LRM : live release mortality, TAR : 총허용보유량

- (운영)

- $(DD + LRM) \geq TAC$ 일 경우 :  $TAR = 0$  (모두 보유 금지)
- $(DD + LRM) < TAC$ 일 경우 :  $TAR = TAC - (DD + LRM)$
- $TAR > 0$ 일 경우, 청상아리 보유를 희망하는 EU, 모로코, 미국이 보유가능량을 할당받게 되고, 희망하는 다른 CPC들도 가능함

- (조건)

1) CPC들이 죽은 폐기량과 생존방류량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청상아리 보유 희망 CPC들은 옵서버 승선 필요\*

\* 모로코와 같이 옵서버(EM 포함)에 의한 관찰이 없을 경우, 어획된 어류를 모두 보유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계산 필요

2) CPC들이 안전 취급·방류 조치를 마련할수록 죽은 폐기·방류 후 폐사량도 감소하게 되고, 이 수치는 매년 업데이트될 것

- (의견)

• (EU) 불가피한 혼획은 발생하고 이미 폐사한 어류는 보유 가능해야 함. 일정량을 먼저 차감하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음

• (캐나다) CPC들이 폐사량을 미보고할 우려가 있음. 보유할 유인을 제공하고 접촉을 피할 유인을 제거함

• (영국) 죽은 폐기량과 방류 후 폐사량이 이미 상당하여 보유할 수 있는 양이 없을 것이므로 처음부터 보유 금지 필요

• (모로코) ICCAT 어업과 관련하여 청상아리를 혼획하는 연승선으로 규정 필요. 패조류 어획하는 연승선은 청상아리 혼획 없음



2-9

## 제98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98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98th Meeting
- 일시/장소 : 2021.08.20.~08.28(7일간), 화상회의
- 의장 : Mr. Alfonso Miranda (페루)

####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미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NGO 등 약 100여명
- 우리나라 대표단 : 수석대표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오성택 외 10명

## II 회의 결과

### 1. 열대성 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합의 실패

- 일본, 에콰도르 등 회원국들이 FAD 조업 추가 금어기 설정 제안
- 눈다랑어 어획 제한 방식으로 IVL(Individual Vessel Limit) 체계 제안
  - 신규 제안된 프로그램으로 과학위의 필요 인력 및 데이터 수집 정도에 대한 정보 파악 필요
  - 눈다랑어 초과 어획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패널티 논의 시작
- 활성화 FAD 설치 개수 제한에 대한 논의 지속
  - 개수 제한에 대하여 다수 회원국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정확한 개수에 대하여 합의 도달 실패함
  - 미국과 EU 등 국가들이 점진적 감소를 통해 2024년까지 6등급 선망선 기준 315개 설치 제한을 제안하였으나 니카르과의 반대로 합의 실패
- 합의점 도달하지 못하여 10월 재논의

### 2. EMS 작업반 수립을 위한 노력 지속

- EMS 도입 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반을 신설하여 논의할 계획
-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를 참고하여 EMS 수립 기준을 구상할 것 합의

2-10

제43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43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43rd Annual Meeting of NAFO
- 일시/장소 : 2021.09..20.~09.24(5일간), 화상회의
- 의장 : Mr. Stephane Artano (프랑스령)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미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NGO 등  
약 00여명
- 우리나라 대표단 : 수석대표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오성택 외 2명

## II 회의 결과

### 1. 과학위 권고에 따른 TAC 수립

어종	권고 조치	TAC 설정
3M Cod	- 2022년 3,000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	- (TAC) 4,000톤 - 다수 회원국이 과학위 권고에 따라 3,000톤으로 설정하길 지지하였으나 EU가 강력하게 4,000톤을 주장하였음
3M Redfish	- 2022년 TAC 10,933t - 2023년 TAC 11,171t	- 과학위 권고와 동일
3M Northern Shrimp	- 2022년 직접 어업 금지	
3NO Cod	- 2022년-2024년 직접어업 금지 - 부수어획도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3LNO American Plaice	- 2022-2024년 직접어업 금지 - 부수어획도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3LNO Yellowtail flounder	- TAC 감소 또는 유지 - 높은 부수 어획 수역 부분 금어기 도입 등 - 2022년-2024년 TAC 점진적 감소 권고 (22,100t → 20,800t → 19,900t)	- 2022-2023년 20,000톤
3LNO Northern Shrimp	- 2022년, 2023년 직접 어업 금지	- 과학위 권고와 동일
3NO Capelin	- 2022-2024 직접 어업 금지	
3NO White hake	- 2022, 2023년 어획은 과거 수준 유지 - 최근 5년 총 어획량 400t 정도	- 2022-2023년 1,000톤
Greenland halibut	- 2022년 TAC 15,864t (2021년 기준 4% 감소)	- 과학위 권고와 동일

## 2. 과학 조사 목적 선박의 어획 제한 수립

- 페로 제도 연승선이 과학 조사 목적으로 어획 활동을 하였으나 630,7t의 초과 어획이 발생하였음
  - 2021년 합의된 TAC보다 42% 초과어획함
- NAFO CEM의 4조(조사선박)의 2항 개정
  - 2항 (c) : 2022년 과학 조사를 위한 3M Cod의 어획이 15mt를 초과할 경우 기국의 할당량에서 차감하며 기국의 할당량이 모두 소진된 경우 과학 조사를 이행할 수 없다.
  - 2항 (d) 2022년 과학 조사를 위한 3M 새우의 어획이 10mt를 도달할 경우 어획을 즉시 중지한다.

## 2-11

### 제98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회의(계속)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98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회의(계속)  
(회의명 영문) 98th Meeting of the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Continued)
- 일시/장소 : 2021.10.18.~10.22(7일간), 화상회의
- 의장 : Mr. Alfonso Miranda (페루)

#####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미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NGO 등 약 100여명
- 우리나라 대표단 : 수석대표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오성택 외 7명

## II 회의 결과

### 1. 열대성 다랑어 보존조치 개정 채택

- (논의 내용) 눈다랑어 어획 제한을 위한 IVL(Individual Vessel Limit) 체계 도입을 위하여 추가 항구 샘플링 조사 등 사무국 및 과학 스태프의 과업이 추가됨
  - 이에 따라 위원회의 재정적 부담은 불가피함
- 논의 결과

구분	상세		
적용 기간	2022, 2023, 2024년		
FAD 개수 제한		현행	합의 결과
	6등급 (1,200m <sup>3</sup> 이상)	FAD 450	2022년 400 2023년 340 2024년 340
연승 조치	2022, 2023, 2024년 눈다랑어 연승 총 어획이 55,131mt/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2-2024 (mt)	
		중국	2,507
		일본	32,372
		한국	11,947
		대만	7,555
	미국	750	
선망선 눈다랑어 어획 제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VL 체계를 도입하여 눈다랑어 어획을 관리 및 제한</li> <li>- 2022년의 경우, CPC는 2017년, 2018년, 2019년 선망선이 눈다랑어를 부유물체 또는 부상군 세트로 평균 1,200mt 이상 어획한 경우 금어기 8일이 추가됨</li> <li>- 2017-2019년 사이 2년만 어획한 경우, 2년간 어획의 평균에 따라 계산하며, 1년만 어획한 경우 해당 년도의 어획 데이터에 따라 본 조치를 이행</li> </ul>		

구분	상세	
	-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이전 년도 눈다량어 연간 1,200mt를 초과 어획한 선박에 대해 추가 금어기 10일 추가	
	초과어획 수준 (t)	추가 금어기 일수
	1500	13
	1800	16
	2100	19
	2400	22

## 2. 연승선 과학 옵서버에 관한 결의 제안서 논의

현행	ECU 제안	EU 제안										
(어획 노력) 연승 어획 노력은 조업일수 또는 낚시수	연승 어획 노력은 조업일수에 따라 결정	연승 어획 노력은 낚시수에 따라 결정										
(데이터 제출)	<p>회원국/CPC 권한 당국은 조업선에 대한 보고를 제공해야하며 이는 해당 문서를 포함해야한다</p> <p>a) 활용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기술 보고서</p> <p>b) 날짜 및 위치(경도 및 위도), 어종, 체장 분포에 대한 통계, 평균 사이즈 및 무게에 대한 일반적 정보</p>	CPC는 사무국장에게 2022년 3월 31까지 역사적 및 현 기간 및 동일 날짜마다 연간 업데이트를 위해 연승선 로그북에서 과학적 담당관에 의해 개발될 양식에 따라 세트별 어획 및 노력 (TASK II 'level 1' 데이터) 및 부수적인 운영 정보를 제출한다. 본 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비밀 유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결의안 C-15-07에 따라 처리된다.										
(EMS 도입)	<p>- EMS 도입 점진적 증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적용 날짜</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상승율</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1월 1일</td> <td>10%</td> </tr> <tr> <td>2023년 1월 1일</td> <td>20%</td> </tr> <tr> <td>2024년 1월 1일</td> <td>50%</td> </tr> <tr> <td>2025년 1월 1일</td> <td>100%</td> </tr> </tbody> </table>	적용 날짜	상승율	2022년 1월 1일	10%	2023년 1월 1일	20%	2024년 1월 1일	50%	2025년 1월 1일	100%	
적용 날짜	상승율											
2022년 1월 1일	10%											
2023년 1월 1일	20%											
2024년 1월 1일	50%											
2025년 1월 1일	100%											



## ○ (주요 의견)

- (일본) 조업 일수 기준 어획 노력 산정 기준에 대하여 반대
- (일본) 현 국내 과학자들이 합동 위원회를 수립하여 사무국에게 필요한 제공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을 표명
- (한국, 일본 등) EMS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점진적 증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

## ○ (결과) 일본, 중국, 대만이 제안서 내용을 반대하여 미채택

## 2. 대형어선 전채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보존조치 개정 논의

## ○ 주요 내용

	현행	에콰도르 제안서
적용 범위	트롤, 채낚기 또는 해양에서 신선 어류의 전채활동을 하는 어선 제외	트롤, 채낚기 또는 해상에서 신선 어류를 전채하는 24m 이하 어선 제외
기국 허가	참치 연승어선은 기국의 사전 허가 없이 해상 전채 승인 불가	참치 연승어선은 협약 수역 내 전채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된 선박 기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기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해상 전채승인 불가
전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채 24시간 전 연승선 선장 및/또는 소유주는 적어도 24시간 전 선명, 운반 선명, 종별 전채량, 전채 날짜 및 위치 어획 위치 등을 기국에 보고</li> <li>- IATTC 전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채 후 15일 이내 제출</li> </ul>	<p>전채 전, 기국의 참치 연승선의 선장 및/또는 선박주는 전채 활동 최소 24시간전에 하기 정보를 기국의 권한 당국 및 항만국에게 통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참치연승선명 및 참치연승선 목록 번호, 선박 IMO 번호, 가능한 경우)</li> <li>b. 운반선명 및 IATTC 운반선 기록 번호, IMO 번호, 그리고 전채될 품목</li> </ul>

	현행	에콰도르 제안서
		c. 전채될 어종별 및 품목별 톤수 d. 전채 장소 및 날짜, 및 e. 참치, 기타 저층 어종 및 상어 어획된 지리적 장소

○ 주요 의견

- (일본) 현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채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으며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요

○ (결과) 일본의 반대로 제안서 미채택

2-12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Fortieth Meeting of the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일시/장소 : 2021.10.18.~10.29(12일간), 화상회의

2. 참석규모

- 참가국 : CCAMLR 회원국 27여 개국(한국, 미국, 일본, EU, 러시아, 호주 등), NGO, 업계 등 3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우동식 외 8명\*  
\* 원양협회 및 업계 참석

## II 회의 결과

### 1. East Antarctic MPA(EAMPA) 제안서

- (논의 배경) 호주, EU, 우리나라 등 9개 회원국\*은 남극 동부에 세 개의 과학 연구 구역 (scientific research zones) 지정을 통한 MPA 수립 제안
  - \* EU, 인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 (논의 내용) 중국과 러시아는 MPA 제안서 논의 시작 전 MPA에 관한 논의 부족 및 신규 과학 조연 부재를 이유로 모든 MPA 제안서에 반대함을 표명
  - EAMPA 논의 중 러시아는 동남극 연구 계획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MPA 수립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해당 구역에 시급한 위협이 없으므로 당장 MPA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견지
  - 중국은 MPA RMP\*의 정의가 분명치 않고, 수립 규정의 불투명함 등 MPA 수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MPA 수립에 반대
    - \* RMP : Research and Monitoring Plan
  - 우리나라, 호주, 미국 등 회원국은 본 제안서가 이미 가용한 최고의 과학에 기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
- (논의 결과) EAMPA 제안서 미채택

### 2. Weddell Sea MPA(WSMPA) 제안서

- (논의 배경) EU, 우리나라, 노르웨이 등 10개 회원국\*은 웨델해 phase 1 수립을 위한 제안서 공동 발의
  - \* EU, 노르웨이, 우루과이,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 한국, 인도, 우크라이나

- (논의 내용) 우리나라, 미국 등 회원국은 웨델해가 인간의 활동이 극히 적은 청정 지역인 만큼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최적의 지역임을 강조하며 WSMPA 수립 지지
  - 일본은 MPA 논의는 국제 논의의 일부인 만큼 국제적 논의 발전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 중국은 작년 자국이 제출한 WSMPA phase 1, 2에 대한 제안서를 상기하고, WSMPA 수립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러시아는 기후변화 요소의 다양성을 고려 시 MPA 수립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며 과학적 추가 논의의 필요성 피력
- (WSMPA 워크숍) 노르웨이는 '22년 웨델해 MPA 수립을 위한 특별 워크숍 개최를 제안
  - 우리나라, EU 등 다수의 회원국이 본 워크숍을 지지하고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는 본 워크숍이 정치적 성격이 강함을 지적하며 명확한 논의를 위한 ToR 수립 필요 주장
- (논의 결과) WSMPA 제안서 미채택

### 3. Domain 1 MPA(D1MPA)

- Domain 1 MPA 제안서 발의국인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올해 D1MPA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채택 논의는 진행되지 않음
  - 추가 논의를 위한 D1MPA 워크숍이 '22년 개최 예정

### 4. 영국, EU - Pina Island Special Area Stage 2 제안

- (논의 배경) 영국과 EU는 파인 아일랜드(88.3해구)를 SASS\* stage 2로 지정하기 위한 CM 24-04 개정안 제출

\* SASS : Speical Area for S scientific Study

- (논의 내용) 우리나라, 뉴질랜드, 미국 등 회원국은 기후변화 영향 연구에서 파인 아일랜드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 동 지역의 SASS stage 2 지정을 지지하였으나,
  - 러시아는 stage 1에서도 과학조사 수행이 가능하다 주장하며 CM 24-01이 만료될 때까지 stage 1 유지 입장 견지
- (논의 결과) 총의 도출 실패로 제안서 미채택

## 5. 기후변화 결의안

- (논의 배경) EU 등 회원국은 새로운 IPCC 발견 내용을 포함하도록 현행 CCAMLR 기후변화 결의안 30/28 개정 제안
- (논의 결과) 많은 회원국이 본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였으나, 결의안 문구에 합의가 나지 않아 채택 무산

## 6. CP/NCP - IUU 목록

- SCIC 권고에 따른 CP/NCP IUU 목록 개정 및 채택

분류	선명	개정 내용
NCP	<i>Nika</i>	(국적 변경) 파나마 → 무국적
	<i>Baroon</i>	(국적 변경) 탄자니아 → 무국적
	<i>Asian Warrior</i>	(국적 변경)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무국적
	<i>Koosha 4</i>	회의 종료 후 이란의 정보 제출과 함께 회기간 목록 해지 논의 예정
CP	<i>El Shaddal</i>	CP-IUU 목록에 신규 등재

## 7. CCAMLR 40주년 선언문

- CCAMLR 40주년 기념 선언문 채택

2-13

## 제27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정기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7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정기회의  
(회의명 영문) 27th Regular Meeting of the Commission
- 일시/장소 : 2021.11.12.~11.23(11일)/화상회의
- 의장 : Mr. Raul Delgado(파나마)

#### 2. 참석규모

- 참가국 : 50개 회원국, 5개 비회원국, 6개 정부간기구, 25개 NGO 등  
약 480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 외 12명

## II 회의 결과

### 1. 열대다랑어 권고(19-02) 개정 논의

구분	제안서 주요 내용
<p>의장</p>	<p>(TAC) '22-24년 : 61,500톤                      (할당) TAC 변동에 따라 연안개도CPC들에게 점진적으로 재할당                      ① TAC=61500톤일 경우 : 비연안개도CPC들은 어획한도 5% 추가 감축, 연안개도 CPC들은 어획한도 10% 증가                      ② TAC&gt;61500톤일 경우 : TAC 증가분만큼 연안개도CPC들은 각 X%씩 어획한도 증가, 그 외 CPC들은 어획한도 유지                      ③ TAC&lt;61500톤일 경우 : TAC 감소분만큼 비연안개도CPC들은 각 Y%씩 어획한도 감축, 연안개도CPC들은 어획한도 유지                      (FAD) ① 금어기 1-3월, ② 선박당 활성화 개수 '23년 250개로 제한</p>
<p>일본</p>	<p>(TAC) '22년 : 61,500톤, '23년 : 70,000톤, '21년 어획량이 TAC(61,500톤)를 초과할 경우, 초과량은 '23년 TAC에서 차감                      (할당) '23년 TAC 증가분은 개도CPC들에게 할당, 개도CPC들이 할당방법을 논의하여 '22년 총회에 제출                      (FAD) ① 금어기 1-3월, ② 선박당 활성화 개수 300개로 제한</p>
<p>중미 (퀴라소,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p>	<p>(TAC) '22-24년 : 75,000톤                      (할당) ① 19-02 어획한도 3500톤 초과 CPC가 어획한도를 20% 이상 미소진할 경우, 최근('16-'19년) 평균어획량을 한도로 적용                      ② 어획한도 차감 후 미할당 TAC는 개도CPC들에게 할당                      (FAD) ① 금어기 1월, 어획한도를 초과한 CPC의 경우 익년에 1-2월 적용, 어획한도를 15% 이상 초과한 CPC의 경우 1-3월 적용 ② 선박당 활성화 개수 300개로 제한                      (MCS) 대형연승선은 전채 20% 이상을 항구에서 실시</p>



구분	제안서 주요 내용
EU	(TAC) 75,000톤 (할당) ① 16-01을 논의 시작점으로, 연안개도CPC들을 위한 할당분 수립 ② 어획한도 수립 전까지 위 CPC들은 최근 평균어획량으로 어획량 유지 ③ 어획한도 없는 비연안개도CPC는 1575톤 미만으로 어획량 유지 (이월) 쿼터표 내 CPC(7개)만 기본쿼터 10%까지 허용 (FAD) ① 금어기 1-3월, ② 선박당 활성화 개수 300개로 제한 ③ 소유권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FAD 등록부 설치 (MCS) ① 대형연승선은 전재 20% 이상을 항구에서 실시 ② ROP 부활

#### ○ 제안서 소개 및 CPC 의견 표명

- 의장은 16-01 내 쿼터 보유CPC들이 연안개도CPC들에게 할당을 이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장안을 제출(남아공 준비)하였고,
- 일본, 중미 CPC들, EU는 별개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각 제안서 소개 후, 주요 요소들에 대해 (이전 회의들에서 계속되었던) CPC들의 입장만 반복되고, 이견 해소를 위한 시도조차 불가했음
- 논의 시간 부족으로, EU가 기존 권고 연장안 준비가 필요함을 언급

#### ○ 기존 권고(19-02) 연장안에 대한 의견 대립 후 절충안으로 합의

- 의장은 19-02 연장안(남아공 준비)을 제시하였으나, 연장안에서 자의적으로 새로운 요소가 도입(연안개도CPC FAD 금어기 면제)되고 현행 일부 요소(전배, 이월)는 삭제된 점에 대한 이의가 제기(EU, 한국)되었고,
- 중미CPC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 FAD 금어기 3개월은 수용 불가하고, TAC는 '20년 기준 62,500톤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은 절충안으로 TAC 62,000톤, 금어기 2.5개월(3.15)을 제시함
- EU는 이견이 있는 3요소(TAC, 이월 조항, FAD 금어기)를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함

- 아프리카 CPC들은 TAC 61500톤, 금어기 10주(3.11)를 주장함
- 한국은 2.5개월과 10주의 중간인 72일(3.13)을 절충안으로 제시하였고, 중미CPC들은 72일이 IATTC 조치와 동일한 것으로서 수용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 코트디부아르만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수용하여 연장안에 합의
- (합의안) 2022년 : ① 눈다랑어 TAC 62,000톤 ② 전배(한국 → 대만 : 눈다랑어 223톤), 이월('20년 미소진 어획한도 → '22년) 허용 ③ FAD 금어기 1.1~3.13(72일), 그 외 19-02 조치를 1년 연장

## 2. 동부 및 지중해 참다랑어 권고 개정

### ○ 2022년 TAC 및 CPC 쿼터

- (TAC) 과학위 변경 조언이 없으므로 '22년 36,000톤으로 유지\*

\* '23년 이후 TAC는 '22년 총회에서 채택될 관리절차(MP)에 따라 결정

CPC	'22년 쿼터(t)
EU	19,460
모로코	3,284
일본	2,819
튀니지	2,655
터키	2,305
리비아	2,255
알제리	1,655
이집트	330
노르웨이	300
한국	200
아이슬란드	180
알바니아	170
중국	102

CPC	'22년 쿼터(t)
대만	90
시리아	80
미할당	115
합계	36,000

- (쿼터 전배) '22년에 ① EU는 영국에 48.4톤 ② 대만은 한국에 50톤까지 전배 승인\*

\* '22년 한국 참다랑어 쿼터 = 200톤(기본) + 50톤(전배) +  $\alpha$  ('21년 미소진 이월)

#### ○ 쿼터 전배 승인 조항(9항)

- (논의배경) CPC간 쿼터 전배 승인 조항에 대해 회기간 회의에서 논의 후 3개 안\*이 연례회의에 제출

\* (1안) “권고 01-12에도 불구하고 쿼터 전배는 관련 CPC 간 승인 하에서만 허용되고, 전배가 이루어지기 48시간 전까지 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일본 제안)

(2안) “전배는 CPC 상호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고, 전배량은 ICCAT 사무국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의장 제안)

(3안) 조항 삭제 (미국 제안)

- (논의결과) 2안(남방 날개다랑어(16-07) 조항 문구)으로 합의

#### ○ 어획보고 주기 변경 : 매주 → 격주

#### ○ 축양장 통제조치 강화

- (논의배경) '18년 몰타 축양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IUU에 대한 후속 조치로 참다랑어 통제추적 작업반이 수립되어 회기간 논의를 진행한 후 19-04 관련 조항 개정안\*이 연례회의에 제출

\* 주요 개정 사항 : 가두리 작업 모니터링, 어류 수량 불일치 시 조사수행 및 후속조치 절차, 임의 통제 및 이월 절차 표준,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및 협업 절차 등

- (논의결과) 일부 조항\*들에 대한 추가 논의 후 개정안 합의

\* 102항 : 선어 시장 공급을 위해, CPC 검색관의 통제가 있을 경우, 축양장 당 최대 하루 1톤(연간 한도 50톤)까지 지역읍서버의 인증 없이 참다랑어 수확 가능. 본 조항은 늦어도 '23년까지 IMM 회의 등에서 검토

### 3. 참다랑어 관리전략평가(MSE) 경과

#### ○ MSE 회의(11.12)

- (배경) 연례회의 직전 참다랑어 예비관리절차(CMP) 작업 경과를 소개하고 관리자 피드백을 받기 위한 MSE 회의가 개최

- (TAC 한도) CMP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동부에 한하여 잠정 55,000톤을 최대한도로 설정하고 작업하기로 함

- (TAC 변동) CMP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리주기 간 TAC 변동 폭을 잠정 20%를 최대한도로 설정하고 작업하기로 함. 최소 변동 규칙\*에 대해서는 100톤 안(CCSBT 규칙)이 제시되었으나 미합의

\* TAC 변동 폭이 매우 작을 경우, TAC 변경으로 인한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TAC 유지

- (기타) ① 어획량-자원상태 간 균형(trade-off) 범위는 더 확대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요청 ② 관리주기는 2년과 3년으로 작업 ③ 비상상황 절차 개발 작업은 MP 채택 후에도 가능하므로 MSE 작업계획에 미포함 ④ 동부 참다랑어 자원평가는 예정대로 '22년에 수행 ⑤ '22년에 MSE 회의 3회(3월, 5월, 10월) 개최

### 4. 북방 날개다랑어 권고 개정

#### ○ 관리절차(MP) 채택

- '16년부터 시작된 MSE를 통해 어획통제규칙(HCR) 및 비상상황 정의를 포함하는 MP 채택

### 〈 북방 날개다랑어 MP 주요 요소 〉

- (기준 생물량( $B_{THRESH}$ )) MSY 수준의 생물량( $B_{MSY}$ ) ○ (최저한계 생물량( $B_{LIM}$ )) =  $0.4 \times B_{MSY}$
- (목표 어획사망율( $F_{MSY}$ )) =  $0.8 \times$  MSY 수준의 어획사망율( $F_{MSY}$ )
- (최저한계 어획사망율( $F_{MIN}$ )) =  $0.1 \times F_{MSY}$
- (자원평가 주기) 3년 (차기 평가: '23년) ○ (최대 어획한도) 50,000톤
- (최대 변동률) 현재 생물량( $B_{CURR}$ )이 기준 총생물량( $B_{THRESH}$ ) 이상일 경우, 어획한도 최대 증가율은 25% 최대 감소율은 20%

#### ○ '22-'23년 TAC 및 어획한도

- (TAC) 37,801톤
- (어획한도) ① EU(29,095.1톤), 대만(4416.9톤), 미국(711.5톤), 베네수엘라(337.5톤) 외 CPC들은 242톤 ② 일본은 자국의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량의 4.5% 내로 제한하도록 노력
- (이월) 조정연도는 기준연도+2, 최대한도 25%

#### ○ 비상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절차 채택

- 비상상황 판단 기준
  - 1) MSE에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자원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MP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가 미가용 또는 부적절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3) MP에 의해 도출된 TAC보다 총어획량이 높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비상상황의 존재가 반드시 MP로부터 도출된 TAC를 폐지할 사유는 되지 않고, 과학위가 지표 및 조연 수정을 검토할 것이 요청됨

## 5. 북대서양 청상아리 권고(19-06) 개정

### ○ 논의 배경 및 경과

- 자원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 북대서양 청상아리 회복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3년간('18~'20) 이루어졌으나 실패

\* '17년 과학위 평가 : 초과어획 상태, 과도어획 중일 가능성이 90%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35년까지는 자원량 감소가 불가피

- 금년 2차례 회기간 회의(1차: 7.6~8, 2차: 10.27)를 통해 이견이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결정만 남겨 둔 의장안이 마련되어 총회에 제출

- 핵심 쟁점은 보유 허용 여부\*로서, 예외적인 보유 허용을 주장하는 측(EU, 미국, 모로코)과 예외 없는 보유 금지를 주장하는 측(영국, 캐나다, 세네갈, 가봉 등)이 대립

\* '70년까지 회복가능성 수치(%) 결정으로 TAC 및 보유 가능성이 결정 (예 : 60% > TAC: 300톤, 52% > TAC: 500톤)

- 회기간 회의에서 일본은 사망폐기량 · 생존방류량에 따른 총허용보유량 산출방법\*을 제안하였고, 주요 CPC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안에 도입됨

\* (사망폐기량+생존방류량) ≥ TAC일 경우 → 총허용보유량은 0 (모두 보유 금지)  
(사망폐기량+생존방류량) < TAC일 경우 → 총허용보유량 = TAC - (사망폐기량+생존방류량)

- '70년까지 회복가능성 수치(%)에 대해 60% 주장(EU, 미국)과 70% 주장(보유 금지 CPC들)이 대립한 후, 캐나다의 절충안으로 합의

## ○ 논의 결과

- (합의) ① '70년까지 회복가능성 60~70% ② '22~'23년에는 보유 금지 ③ 데이터 검토 후 '23년에 보유 금지 조치 계속 여부 결정 ④ 새로운 조언 전까지 (보유 허용의 경우) 총허용보유량은 250톤 ⑤ CPC 보유한도 할당 기준은 '13~'16년 평균어획량

## 5. 바다거북 권고 개정

## ○ (논의배경) 미국은 '19년 회의에서 미채택된 제안서\*를 다시 제출

\* 주요 내용 : 바다거북 보존을 위해 천해(100m 내) 연승어업에서 1) 대형 환형낙시 또는 2) finfish 미끼 사용

## ○ (주요의견)

구분	의견
일본	① 환형낙시 및 finfish 미끼 사용의 바다거북 보존 효과는 인정함 ② 하지만 환형낙시는 특히 청상아리 어획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과학위 결론이 없으므로 제안서 반대
미국	① 태평양과 동일한 조치임 ② 올해 데이터 오류 수정으로 환형낙시 사용시 청상아리 어획 증가 없음이 확인되었음
과학위 부의장	J-후크와 비교하여 환형낙시 사용시 청상아리 어획 증가율은 크지 않으나, 양승시 폐사 감소율(10%)은 큼
EU	태평양에서의 조치가 대서양과 지중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지중해에서의 조치를 토대로 미국과 협의하고자 함

## ○ (논의결과) EU는 미국에 지중해수산위원회(GFCM) 조치 문구로 수정제안 하였으나, 미국은 GFCM 조치는 자발적인 조치임을 이유로 수정제안을 거부하고, 제안서는 미채택\*

\* 미국은 내년에 다시 제출할 것임을 언급하고, EU도 제안서를 준비할 것임을 언급

## 6. 상설작업반 제안서

### ○ (채택) 11개 제안서

제목	제안	주요 내용
어획증명제도 작업반 수립 결의	일본	어획증명제도(CDS) 필요성, 적용 어종, 설계 및 이행 어려움, 타 제도와 중복 방지, 양립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 수립 * 일본은 반드시 CDS를 수립하는 것이 아닌 CDS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임을 강조
전자감시시스템 작업반 수립 결의	EU	전자감시시스템 표준개발, 이행전략 등에 관한 권고 마련을 논의하 기 위한 작업반 수립 * 일본은 본 작업반이 새치류 작업반에서 진행 중인 EMS에 관한 논의 후 에 진행되어야 함을 언급
근로기준 논의 과정 수립 결의	미국	ICCAT 어업 내 근로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 수립 * 중국 요청으로 '강제노동' 용어를 '근로기준'으로 수정 * 일본은 본 작업반의 결론이 구속력 있는 조치 마련이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
참다랑어 가공선 원격 전자감시 시범사업 수립 결의	EU	참다랑어 수획 부문 통제 강화를 위해 가공선에 대한 원격 전자감 시 시범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결의 * 일본은 시범사업 모든 비용을 EU가 부담해야 하고 사무국 업무 비중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
전재에 관한 권고(16-15) 개정	미국, 세네갈	IMO 번호 없는 운반선 사용 금지, 전재 후 신고 기한 15일 → 5 근무일로 변경 * 한국, 중국, 일본의 반대로 비CPC 운반선 사용 금지 제안은 미수용
20m 이상 선박목록 수립 권고(13-13) 개정	EU, 미국	전문에 IMO 번호 대상 선박 확대(20m→12m)에 관한 언급 추가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 권고(18-13) 개정	노르 웨이	CPC 쿼터가 준수될 경우, 개별 선박 쿼터를 초과하여 어획된 참다 랑어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 * EU의 우려 제기로, 매년 이행위에 사안이 회부되도록 규정



제목	제안	주요 내용
참다랑어 어업 VMS 데이터 교환 권고(07-08) 개정	IMM 작업반	VMS 최소기준 개정 권고(18-10)와 참조 관계 명시, 참다랑어 공동조업 기국으로 하여금 선박 식별을 위한 정보 기입을 의무화
무국적선에 관한 권고	IMM 작업반	협약수역 내 활동하는 무국적선은 IUU어업으로 간주
IUU 선박목록 권고(18-08) 개정	IMM 작업반	대상 선박을 규정한 1항 내 i) '협약수역 내 조업 및 지원 활동' 문구 추가
eBCD 시스템 적용에 관한 권고(20-08) 개정	PWG 의장	EU 회원국 간 일부 참다랑어 상품 유형 거래에 대한 eBCD 적용 면제 기한을 1년 연장

## ○ (미채택) 3개 제안서

제목	제안	주요 내용
자국민 이행 촉진 권고(06-14) 개정	EU, 영국, 미국	IUU어업에 관여한 자국민에 대한 실효적 조치 이행 * 중국은 다른 ICCAT 권고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유로 반대
서부 대서양 국제공동 검색제도 권고	캐나다	서부 대서양 해역을 위한 국제공동 승선검색제도 수립 * 중국은 승선검색제도 수립을 위한 협약상 근거 없음을 이유로 반대
상어 권고	9개 CPC*	첫 양륙 지점까지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일본 반대) * 벨리즈, EU, 가봉,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생피에르 미켈롱), 미국

2-14

## 제18차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연례회의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8차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18th Annual Commission Meeting
- 일시/장소 : 2021.11.22.~11.25(4일간), 화상회의
- 의장 : Mr. Stefaan Depypere (EU)

####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EU, 일본 등 7개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NGO 등 약 50여명
- 우리나라 대표단 :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정상덕 연구사 외 1명

## II 회의 결과

### 1. 협약 수역 TAC 설정

어종	TAC 설정
오렌지 러피	- 2022-2023년 TAC : 0톤 B1 구역 부수어획 4톤 그 외 협약 수역에서 50톤 허용 - 2023-2024년 TAC : B1 구역에서 연구 쿼터 설정 (해당 어업을 수행할 팀이 조사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심해 홍게	- 2022-2023년 TAC : B1구역 162톤, 그 외 협약 수역에서 200톤(현상 유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 2022-2023년 TAC : 소구역D 261톤, 그 외 수역 0톤
금눈돔	- 2022-2023년 TAC : 200톤(현상 유지), 2022-2023년 B1구역 최대 132톤 할당 가능
표영 황줄돔과 (Pelagic Armourhead/ Southern boarfish)	- 2022-2023년 TAC : 135톤 (현상유지)

### 2. 대면 회의 격년 주기 전환 논의

- 회의는 매년 개최하되 대면회의 방식만 격년으로 진행하도록 합의
- 기술적 이유로 온라인으로 회의를 참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회원국이 있어 이에 대하여 내년에 재논의할 것 합의

2-15

##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I

###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8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18th Regular Session of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Commission
- 일시/장소 : 2021.11.29~12.07(9일간), 화상회의
- 의장 : 김정례(대한민국)

#### 2. 참석규모

- 참가국 : WCPFC 회원국 33여 개국(한국, 미국, 일본, EU, 호주 등), NGO, 업계 등 3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우동식 외 38명

## II 회의 결과

### 1. 열대성 다랑어 보존조치(CMM 2020-01)

- (논의 배경) 현행 보존조치가 '22년 2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 보존조치 개발 필요
  - \* CMM 2019-04 제57항  
'21년 2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20년 WCPFC17에서 현행 조치를 1년 연장하여 '22년 2월까지 효력 유지
  - 주요 사안별\* 국가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의견 조율을 위한 방편으로 패키지 논의 진행
    - \* (1)관리 목표, (2)FAD 금어기, (3)공해 선망 노력, (4)연승 관리 강화, (5)연승 눈다랑어 어획 한도 등 다섯 개 요소를 동시 논의
- (국별 패키지 제안) 우리나라, 미국, 일본, FFA, PNA,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제안
  - (우리나라 패키지 제안)

패키지 요소	제안 내용
관리 목표	전제 조업 기회가 증가한다면 유연한 입장
FAD 금어기	(16항) FAD 금어기 20% 감축(약 72일) (17항 및 각주1)* 유지
공해 선망 노력	(비SIDS 국가) 선망선 1척당 공해조업일수 30일 (SIDS) '18-'20년 공해조업수준 유지 권장
연승 관리 강화**	1. 공해 입출역 6시간 전 보고 2. 어획/노력량 데이터 기국에게 전자식 일일 보고
눈다랑어 어획 한도	현행 조치 표3에 나열된 국가들 1,500톤씩 증가

\* 17항 : 키리바시, 필리핀 공해 FAD 금어기 면제  
각주1 : PNA 선박 FAD 금어기 면제

\*\* FFA 연승 MCS 강화 제안 : (1)공해 입출역 6시간 전 보고, (2)'23년부터 어획/노력량 일일 보고, (3)'23년까지 위원회 전자보고(EM) 프로그램 수립, (4)눈다랑어 CDS 개발, (5)'22년 전제 보존조치(CMM 2009-06) 개정 등 제안

- (타국 주요 패키지 제안)

국가	패키지 요소	제안 내용
FFA	관리 목표	현행 유지
	FAD 금어기	현행 유지(조치의 균형 유지를 위해 다른 요소 변화에 따라 조정)
	공해 선망 노력	1. 표2의 SIDS 면제 유지 2. 할당 프레임워크 기간 연장(28항)
	연승 관리 강화	FFA 제안(35bis~37quinquies)
	눈다량어 어획 한도	1. 표3 유지 2. 눈다량어 공해 할당 프레임워크 기간 연장(44항)
PNA	관리 목표	모든 목표 삭제
	FAD 금어기	1. 3개월 FAD 금어기 삭제 또는 감축 2. 각주1 및 FAD 정의 삭제 시 3개월 FAD 금어기 삭제
	공해 선망 노력	1. 표2의 SIDS 면제 유지 2. 할당 프레임워크 기간 연장(28항)
	연승 관리 강화	연승 관리 강화를 나중에 도입할 수 있으나, 관리 강화 전까지는 눈다량어 한도 증가 반대
	눈다량어 어획 한도	연승 VDS 등 수역기반(zone-based) 관리 도입 시에만 한도 증가 합의 가능
미국	관리 목표	협약수역 내 산란자원량 고갈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수역별 관리 도입 제안
	FAD 금어기	'22년까지 금어기 실행 후, 기국 조사를 위한 옵서버 보고서 제공 방안 개발 전까지 금어기 중지
	공해 선망 노력	아메리카 사모아 공해 선망 노력 면제 제안
	연승 관리 강화	FFA 제안 중 daily report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동의 가능
	눈다량어 어획 한도	1. 표3에 나열한 국가들 3,000톤씩 증가 제안 2. FFA 제안(44항)은 공해와 함께 EEZ도 포함
일본	관리 목표	의견 없음

국가	패키지 요소	제안 내용
	FAD 금어기	현행 유지
	공해 선망 노력	미국 우려 수용 가능
	연승 관리 강화	추가 조치 반대
	눈다랑어 어획 한도	표3 : 현행 유지 39항 및 44항 : FFA 제안 찬성
대만	관리 목표	1. 눈/황다랑어 : 현행 유지 1. 가다랑어 : '12년 산란자원량 수준
	FAD 금어기	현행 유지
	공해 선망 노력	EU가 제안한 SIDS 공해 선망 노력 3,000일 제한 지지
	연승 관리 강화	FFA 제안 지지
	눈다랑어 어획 한도	미국 제안 지지

- (공해 선망 노력 증가) 우리나라는 비SIDS 국가의 공해 조업일수를 국별 선망선 1척 당 30일을 보장하도록 개정 제안
  - FFA, PNA, 미국, 일본 등 패키지 논의에 참여한 주요 국가들은 공해 선망 노력 증가는 현행 조치에 명시된 할당 프레임워크 개발과 함께 진행을 선호하며 본 제안을 반대
  - 우리나라의 공해 선망 노력 증가안은 다른 회원국의 지지를 얻지 못해 패키지 논의에서 제외되며 무산
- (아메리카 사모아 면제) 미국은 다른 SIDS와 달리 아메리카 사모아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16항 각주1 및 제17항에 아메리카 사모아 포함 제안\*

\* 미-아메리카 사모아 용선 계약에 따라 아메리카 사모아에 하역하는 선박 대상으로 각주1 및 제17항 면제 제안

- FFA, 일본 등 국가들은 아메리카 사모아의 제16항 면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아메리카 사모아 인근 EEZ로 적용 수역을 제한하고, 아메리카 사모아에 하역하는 비율(예를 들어 70~80%)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
  - PNA 국가들은 아메리카 사모아를 제17항에 포함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크게 반발
  - 미국은 아메리카 사모아가 각주1과 제17항 의무에서 면제되어도 위원회 전체에서 비중이 매우 작음을 강조하였고, FFA, 일본 등의 아메리카 사모아 인근 EEZ 및 하역 비율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 견지
  -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미국이 제안을 철회하며 논의 종료
- (미국 옵서버 보고서 제안) 미국은 FAD 금어기 중 발생한 불이행 사안에 대한 기국 조사를 위해 필수인 옵서버 보고서 제공이 개선되지 않으면 FAD 금어기를 중단하는 패키지안 제출
- 미국, 우리나라 등 회원국은 오랜 기간 옵서버 보고서 부재로 인한 기국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미국은 이번 패키지 논의를 통해 본 사안 해결을 도모
  - FFA는 옵서버 보고서 문제는 기국과 옵서버 제공자 사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생긴 문제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본 제안에 반대
- (연승 수역기반(zone-based) 관리) FFA는 자국 수역 내 연승 VDS\* 실행을 알리고 본 내용을 보존조치에 명시 제안
- \* 선박조업일수제도(Vessel Day Scheme, VDS)
- 본 제안은 연승 눈다량어 어획 한도 증가와 맞물려 FFA가 연승 MCS 강화 및 FAD 금어기 축소를 함께 엮은 패키지 요소이며,
  - 일본은 FFA의 연승 수역기반 관리 제안에 대해 논의 및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며 본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 우리나라, 미국 등 국가는 본 연승 VDS의 작동방식,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반대

- (연승 MCS 강화) FFA의 MCS 강화 제안에 중국, 대만 등 국가는 현실적 실행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며 반대하였고,
  - 우리나라는 공해 입출역 보고, 노력량/어획량 일일 보고 등에서 수용 의지를 보였으나, 전자감시(EM) 및 눈다랑어 CDS 등에 관한 FFA 제안에는 반대
  - 본 사안에 합의가 나지 않아 연승 눈다랑어 어획 한도 증가도 무산
- (논의 결과) 패키지 논의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현행 조치 2년 연장\* 결정
  - \* 개정 보존조치는 '24년 2월 10일까지 효력 유지

## 2.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조치(CMM 2020-02)

- (논의 배경) 지난 10월 개최된 제17차 북방위원회(NC17)는 위원회에게 태평양 참다랑어(PBF) 어획 한도 증가를 포함한 PBF 보존조치 개정안 채택 권고
- (논의 내용) 일본, 우리나라, 대만 등 NC 회원국은 본 개정안을 지지하였으나,
  - FFA 회원국은 PBF 자원평가 및 증가 시나리오에 이용한 과학 분석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PBF 어획 증가에 반대
- (논의 결과) 일본과 FFA의 양자 협의를 통해 합의 도출 및 개정안 채택



# 2021

## 해외수산협력센터

###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